

연구
보고서

2022

01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선행연구	3
3. 연구 내용 및 구성	4
II. 시기방식 부채평가	5
1. 주요 내용	5
2. 평가 예시	6
3. IFRS17 및 K-ICS 부채평가 비교	11
III. 국내 감독회계 및 거리제도 현황	13
1. 감독회계	13
2. 거리제도	22
IV. 해외 국가별 거리제도	46
1. 캐나다	46
2. 호주	52
3. 영국	57
4. 미국	62
5. 일본	66
6. 소결	72
V. 제도 개선방안	75
1. 해약환급금	75
2. 손익분석	77
3. 계약자배당	80
4. 소결	84

VI. 향후 연구과제	85
1. 주주배당가능이익	85
2. 법인세	87
3. 자본관리	89
• 참고문헌	94
• 부록	97

표 차례

〈표 II-1〉 주요 가정	7
〈표 II-2〉 IFRS17 현금흐름	7
〈표 II-3〉 연도별 IFRS17 변화	8
〈표 II-4〉 수익 비교	8
〈표 II-5〉 비용 비교	9
〈표 II-6〉 이익 비교	10
〈표 III-1〉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 비교	14
〈표 III-2〉 현행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 재무상태표 비교	15
〈표 III-3〉 현행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 손익계산서	16
〈표 III-4〉 국내 책임준비금 제도 연혁	24
〈표 III-5〉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현황	26
〈표 III-6〉 손해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현황	26
〈표 III-7〉 국내 해약환급금제도 연혁	27
〈표 III-8〉 보험가격 자유화 단계	28
〈표 III-9〉 표준 신계약비 한도	28
〈표 III-10〉 표준 신계약비 한도 변경	29
〈표 III-11〉 상품별 표준해약공제액	30
〈표 III-12〉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 기준	34
〈표 III-13〉 손익요소별 작성내용	35
〈표 III-14〉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투자손익 배분	36
〈표 III-15〉 국내 계약자배당 제도 연혁	39
〈표 III-16〉 계약자배당금 결정방식	43
〈표 IV-1〉 캐나다 종신보험상품의 연도별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49
〈표 IV-2〉 캐나다의 5대 이원분석 항목	50
〈표 IV-3〉 호주의 최저해약환급금 산출방법	53
〈표 IV-4〉 호주의 생명보험 이원 구분	54
〈표 IV-5〉 호주의 사업범주별 보유이익	56
〈표 IV-6〉 영국의 책임준비금 관련 기준	57
〈표 IV-7〉 내재가치 분석 주요 내용	60
〈표 IV-8〉 미국 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 이원분석	65

〈표 V-1〉 국내 및 해외제도 비교(해약환급금)	75
〈표 V-2〉 국내 및 해외제도 비교(손익분석)	78
〈표 V-3〉 국내 및 해외제도 비교(계약자배당)	80
〈표 VI-1〉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비교	91

그림 차례

〈그림 II-1〉 보험부채 구성(IFRS17, SAP)	5
〈그림 II-2〉 IFRS17 손익계산서 예시	6
〈그림 II-3〉 손익 비교	11
〈그림 II-4〉 부채 평가요소 비교	12
〈그림 III-1〉 보험회계 구분	17
〈그림 III-2〉 계리제도 간 관계	21
〈그림 III-3〉 해약환급금 비교 예시	31
〈그림 III-4〉 3이원방식 보험료 산출 및 분석과정	33
〈그림 III-5〉 국내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산출과정	40
〈그림 III-6〉 배당안정화준비금 추이	41
〈그림 III-7〉 생보 보험료적립금 중 유배당보험 비중	44
〈그림 IV-1〉 캐나다식 자산부채 평가법(CALM) 프로세스	47
〈그림 IV-2〉 일본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68
〈그림 IV-3〉 2019년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회사의 3이원분석 공시	69
〈그림 IV-4〉 일본 사망보험의 3이원방식 계약자배당 계산방식	71
〈그림 IV-5〉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배당금 구조	71
〈그림 V-1〉 계약자배당(1안)	81
〈그림 V-2〉 계약자배당(2안)	82
〈그림 V-3〉 계약자배당(3안)	83
〈그림 VI-1〉 배당가능이익	85
〈그림 VI-2〉 회계기준별 배당가능이익의 변화(금리 하락 시)	86
〈그림 VI-3〉 생보사 자본성증권 발행현황	89
〈그림 VI-4〉 손보사 자본성증권 발행현황	89
〈그림 VI-5〉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92
〈그림 VI-6〉 계약재매입과 계약이전 비교	93

A study on supervisory accounting and actuarial system in response to K-ICS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a solvency system based on market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2023. Since K-ICS mainly focuse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available capital and required capital,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lated supervisory accounting and actuarial system that can affect the cash flow of insurance liabilitie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main contents of domestic supervisory accounting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the actuarial system. Next, we compare the actuarial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as well as Canada, Australia, and the UK, wher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has been introduced.

Considering international cases and new syst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ctuarial system according to each purpose without linking to insurance liabilities in the future. We offer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supervisory accounting and actuarial system in response to K-ICS. First, the surrender value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policyholder protection, but also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based on cash flow method and impact on insurer's financial soundness. In addition, profit and loss analysis should focus more on an explanation for the specific cause of changes in insurance company's profits and losses than on a basic material for policyholder dividends, and policyholder dividends should consider a rational profit distribution to policyholders.

요약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와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원가방식 보험부채에 기반하여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시가방식 보험부채와 계리제도를 연계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시가방식 부채평가의 주요 내용과 평가방식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후 국내 감독회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리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부채시가평가가 도입된 해외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국가별 계리제도를 비교한다.

해외 사례 및 도입될 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험부채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계리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부채시가평가는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배당, 법인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부채구조조정,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리 방안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¹⁾될 예정이다. K-ICS는 2017년 3월에 공표되고 도입 초안(K-ICS 1.0)이 2018년 4월 발표된 이후 매년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발표된 도입 수정안(K-ICS 4.0)에서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²⁾되었으나 재무제표 용어와 기초서류상 책임준비금 명칭이 변경된 수준으로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등 감독회계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계리제도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K-ICS의 도입과 더불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또한 2023년 도입될 예정으로 비교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에 계약자배당 금액 등을 포함하여 추정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을 기반으로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시가방식의 보험부채는 평가시점마다 계리적 가정과 경제적 가정을 새로 추정하여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을 평가한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가 없다면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보험회사는 자본 및 손익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는 기존 제도에 대한 연속성이 낮아져 계약자배당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6. 11),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발표”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7. 5),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K-ICS 도입에 따라 감독회계와 계리제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계리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의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이슈발굴을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선행연구

국제회계기준(IFRS)과 RBC가 도입된 2011년 이전에도 보험회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김관치(1993)는 현재의 계약자배당제도가 1984년의 사차배당으로 시작되었으며 1986년도에 이르러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계약자배당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언급하고 영국, 미국, 일본의 계약자배당 역사를 설명하였다.

김규승 등(1997)은 국내 보험회계제도와 해외 제도를 비교한 후 수익 및 비용인식, 계약자배당, 책임준비금, 솔벤시 마진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이라는 회계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졌다. 노병윤 등(1999)은 가격자유화에 따라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비차 배당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해식(2001)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의 현안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과제를 논의하였다.

보험회계 관련 연구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1단계인 IFRS4가 2004년 발간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김해식(2004)은 국제회계기준 및 각 국가별 보험회계제도를 비교하고 국내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연구가 관련 제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나동민(2007)은 주주와 계약자 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주요국 사례 및 대안별 실증분석을 통해 구분계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해식 등(2012)은 현금흐름 방식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이원분석 등 계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창수(2015)는 IFRS4 2단계(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운영방안, 보험계리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오창수 등(2020)은 IFRS17 도입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ICS 도입이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특히 계리제도인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손익분식, 계약자배당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주제별 단편적 연구가 아닌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제도와의 비교, 국내 계리제도의 발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 될 수 있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K-ICS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체계를 살펴보고 관련된 계리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후 이를 통해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계리제도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시가방식 부채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국내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를 설명하고 제IV장에서 해외 국가의 계리제도를 조사한다. 제V장에서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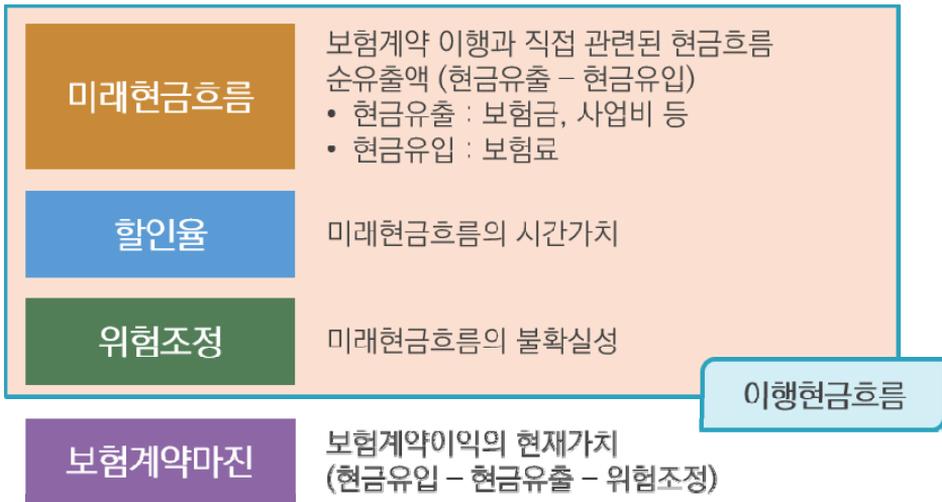
II

시가방식 부채평가

1. 주요 내용

보험부채시가평가는 평가시점에 가정을 재산출하여 <그림 II-1>과 같이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이라는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미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평균값으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순 유출액으로 산출한다. 현금유출액은 보험금, 직접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현금유입액은 보험료가 해당된다. 할인율은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할인율의 수준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규모가 달라진다. 위험조정은 예상과 다른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을 합쳐서 이행현금흐름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이익의 현재가치로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기대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I-1> 보험부채 구성(IFRS17, SAP)



부채시가평가는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II-2>에서 보면 현재는 ① 영업보험료가 보험관련 수익이지만 IFRS17은 ② 보험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보험계약마진 등에 기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금과 사업비 등에서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보험계약마진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이익 인식이 가능하다. ③ 또한 보험 관련 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의 부채이자비용이 IFRS17에서는 투자비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④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익별 원천을 재무제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2> IFRS17 손익계산서 예시

현행		IFRS 17	
I. 보험관련수익	500	I. 보험수익	200
1. 보험료수익	500	1. 예상 사고보험금, 예상 직접유지비	105
II. 보험관련비용	410	2. 예상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1. 지급보험금	300	3.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80
- 사고보험금	100	II. 보험비용	120
- 중도금부금	200	1. 실제 사고보험금, 실제 직접유지비	105
2. 직접유지비	5	2. 실제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신계약비 상각	40	3. 간접사업비	0
4. 준비금 전입액*	65	III. 보험이익	80
III. 보험관련이익	90	IV. 투자이익	5
IV. 투자이익	20	1. 투자수익	25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부채이자비용)	20
2. 투자비용	5	V. 영업이익	85
V. 영업이익	110		

* 준비금 증감(50) + 부채이자비용(15)

2. 평가 예시

본 장에서는 단순화된 가정을 이용한 예시를 통해 현행 원가방식 부채평가와 시가방식 부채평가를 비교한다.

〈표 II-1〉 주요 가정

주요 가정	
• 보험료: 연간 500(순보험료 400, 부가보험료 100), 2년납, 보험기간 4년	
• 보험기간 동안 매년 위험률 동일(위험보험료 150)	
• 사고보험금 400, 2년차에 중도급부금 200 지급 가정	
• 사업비 100(직접 신계약비 60, 간접 신계약비 20, 직접유지비 20)으로 구성	
• 직접 신계약비는 4년 균등 상각 가정	
• 할인율 5%, 보험계약마진은 4년 균등 상각 가정	
• 최초 위험조정 측정(매년 25씩 감소)	
• 경험조정(= 실제 현금흐름 - 예상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투자수익은 매년 25 발생, 투자비용은 매년 5 발생	
• 부채이자비용은 매년 15 발생(가정의 단순화를 위해 IFRS4와 IFRS17의 부채이자비용 동일)	

〈표 II-1〉의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계약시점 보험계약마진을 계산해보면, ‘현금유입(1,000) - 현금유출(680) - 위험조정(100)’에 의해 220이 된다. 총 현금유출은 700이나 간접신계약비인 20은 현금흐름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계약마진 산출에 사용되는 현금유출액은 680이다.

〈표 II-2〉 IFRS17 현금흐름

구분	합계	1Y	2Y	3Y	4Y
❖ 현금유입	1,000	500	500	-	-
- 순보험료	800	400	400	-	-
(위험보험료)	-	150	150	150	150
(저축보험료)	-	250	250	△150	△150
(준비금 증감)	-	250	50	△150	△150
- 부가보험료	200	100	100	-	-
❖ 현금유출	700	140	320	120	120
- 사고보험금	400	100	100	100	100
- 중도급부금	200	-	200	-	-
- 사업비	100	40	20	20	20
직접신계약비	60	15	15	15	15
직접유지비	20	5	5	5	5
간접신계약비	20	20	-	-	-

〈표 II-3〉 연도별 IFRS17 변화

구분	계약시점	1Y	2Y	3Y	4Y
총 부채 (② - ① + ③ + ④)	0	255	370	185	-
① 미래 현금유입 현재가	1,000	500	-	-	-
② 미래 현금유출 현재가	680	515	210	105	-
③ 위험조정	100	75	50	25	-
④ 보험계약마진	220	165	110	55	-

〈표 II-4〉에서 보험수익을 살펴보면 IFRS4에 비해 IFRS17이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가 지급보험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수익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신계약비와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배분된다는 것이 IFRS4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표 II-4〉 수익 비교

IFRS4					IFRS17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I. 영업수익	525	525	25	25	I. 영업수익(II+III)	225	225	225	225
- 보험료수익 ¹⁾	500	500	-	-	II. 보험수익	200	200	200	200
- 투자수익 ²⁾	25	25	25	25	- 지급보험금 ¹⁾	100	100	100	100
					- 직접(신)배분 ²⁾	15	15	15	15
					- 직접(유) ¹⁾	5	5	5	5
					- 위험조정 변동 ³⁾	25	25	25	25
					- CSM 상각 ²⁾	55	55	55	55
					III. 투자수익 ⁴⁾	25	25	25	25

주: 1) 수취한 수입보험료 전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함
2) 투자 수익도 영업수익에 포함

주: 1) 당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지급보험금, 직접(유)을 보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함, 단,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가 지급보험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수익 규모 감소함
2) 직접(신)과 CSM은 서비스 제공 패턴에 따라 보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배분함
3) 감소된 위험조정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함
4) 투자 수익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함

〈표 II-5〉는 IFRS4와 IFRS17의 비용인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보험비용에서 IFRS4의 지급 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계약비는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되었다. IFRS17에서 지급보험금, 직접신계약비, 직접유지비는 수익과 금액이 동일하고 간접신계약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부채이자비용이 IFRS4에서는 준비금 전입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IFRS17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IFRS17의 투자비용이 IFRS4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5〉 비용 비교

IFRS4					IFRS17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I. 영업비용	415	415	△25	△25	I. 영업비용(II+III)	160	140	140	140
- 지급보험금 ¹⁾	100	300	100	100	II. 보험비용	140	120	120	120
- 신계약비 상각 ²⁾	40	40	-	-	- 지급보험금 ¹⁾	100	100	100	100
- 사업비	5	5	5	5	- 직접(신)배분 ¹⁾	15	15	15	15
- 준비금 전입액	265	65	△135	△135	- 직접(유) ¹⁾	5	5	5	5
· 준비금 증감	250	50	△150	△150	- 간접사업비 ²⁾	20	-	-	-
· 부채이자비용	15	15	15	15	- 경험조정 ³⁾	-	-	-	-
- 투자비용	5	5	5	5	III. 투자비용 ⁴⁾	20	20	20	20

주: 1) 지급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를 포함
 2) 집행된 실제 신계약비 80은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균등하게 상각

주: 1) 지급보험금, 직접(신)배분액, 직접(유)은 수익과 비용 금액이 동일
 2) 간접신계약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반영
 3) 당기에 실제로 지급한 지급보험금, 사업비와 예상한 금액과의 차이는 경험조정으로 반영
 4) 투자비용은 부채이자비용도 포함

〈표 II-6〉은 위에서 제시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 산출된 이익의 비교를 보여주는데, IFRS4는 영업이익을 비차, 사차, 이차를 별도 산식으로 산출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IFRS17은 위험조정변동,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등으로 손익계산서상에서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

〈표 II-6〉 이익 비교

IFRS4				
P/L	1Y	2Y	3Y	4Y
I. 보험 관련 수익	500	500	-	-
- 보험료수익	500	500	-	-
(위험보험료)(a)	150	150	150	150
(저축보험료)	250	250	△150	△150
(부가보험료)(b)	100	100	-	-
II. 보험 관련 비용	410	410	△30	△30
- 지급보험금	100	300	100	100
(사고보험금)(c)	100	100	100	100
(중도급부금)	-	200	-	-
- 신계약비 상각(d)	40	40		
- 직접유지비(e)	5	5	5	5
- 준비금 전입액	265	65	△135	△135
· 준비금 증감*	250	50	△150	△150
· 부채이자비용(f)	15	15	15	15
III. 보험이익(I-II)	90	90	30	30
IV. 투자수익(g)	25	25	25	25
V. 투자비용(h)	5	5	5	5
VI. 투자이익(IV-V)	20	20	20	20
VII. 영업이익(III+VI)	110	110	50	50

P/L	1Y	2Y	3Y	4Y
VII. 영업이익 (①+②+③)	110	110	50	50
① 비차이익	55	55	△5	△5
② 사차이익	50	50	50	50
③ 이차이익	5	5	5	5

주: ① 비차이익 = 부가보험료(b) - 신계약비 상각(d)
- 직접유지비(e)

② 사차이익 = 위험보험료(a) - 사고보험금(c)

③ 이차이익 = 투자수익(g) - 부채이자비용(f)
- 투자비용(h)

* 준비금 증감 = 저축보험료 - 중도급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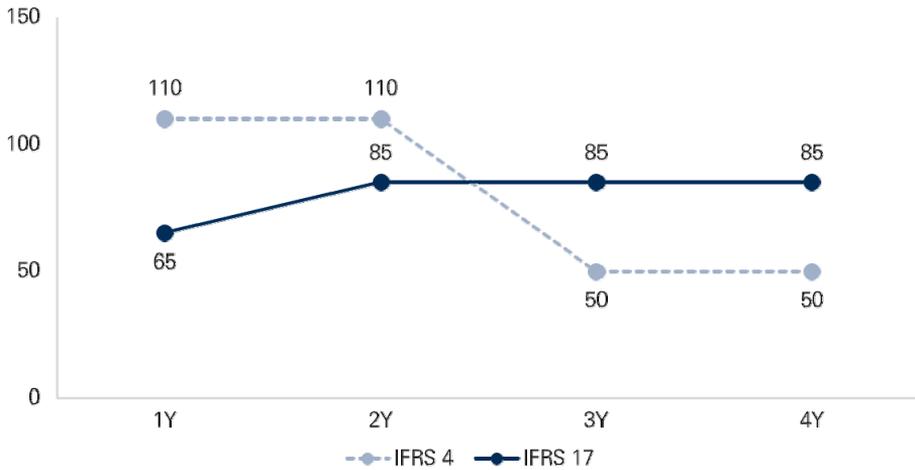
IFRS17				
P/L	1Y	2Y	3Y	4Y
I. 보험수익	200	200	200	200
- 지급보험금	100	100	100	100
- 직접(신)배분	15	15	15	15
- 직접(유)	5	5	5	5
- 위험조정 변동	25	25	25	25
- CSM 상각	55	55	55	55
II. 보험비용	140	120	120	120
- 지급보험금	100	100	100	100
- 직접(신)배분	15	15	15	15
- 직접(유)	5	5	5	5
- 간접사업비_실제	20	-	-	-
- 경험조정	-	-	-	-
III. 보험이익(I-II)	60	80	80	80
IV. 투자수익	25	25	25	25
V. 투자비용	20	20	20	20
- 투자비용	5	5	5	5
- 부채이자비용	15	15	15	15
VI. 투자이익(IV-V)	5	5	5	5
VII. 영업이익(III+VI)	65	85	85	85

P/L	1Y	2Y	3Y	4Y
III. 보험이익 (①+②-③-④)	60	80	80	80
① 위험조정 변동	25	25	25	25
② CSM 상각	55	55	55	55
③ 간접사업비	20	-	-	-
④ 경험조정	-	-	-	-
VI. 투자이익	5	5	5	5
VII. 영업이익(III+VI)	65	85	85	85

주: 실제와 예상 현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이익은 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 서비스에 따라 전 보험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됨. 단, 간접사업비로 분류한 금액만큼 계약 초기비용 부담이 발생함

IFRS4는 보험료가 납입되는 초기에 이익이 많고 납입 종료 후 이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보여주나 IFRS17은 기간별로 이익이 균등하게 분포한다. 다만, 간접사업비로 인해 계약초기에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분류 비율에 따라 이익의 수준이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I-3〉 손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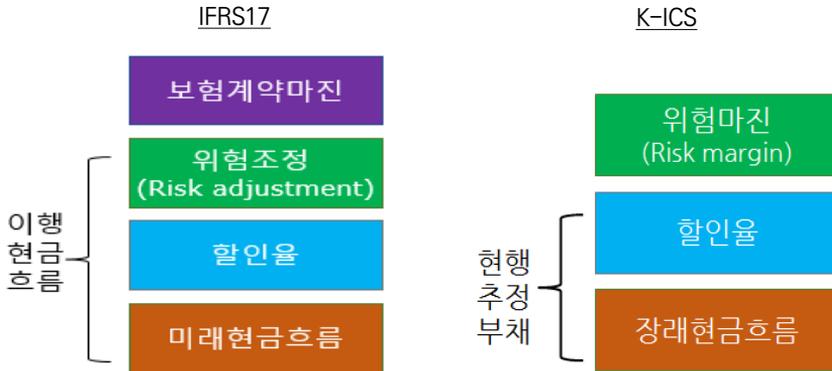
3. IFRS17 및 K-ICS 부채평가 비교

IFRS17과 K-ICS는 시가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나 평가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평가요소 중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IFRS17은 미래현금흐름에 간접신계약비가 제외되나 K-ICS는 간접신계약비도 현금흐름에 포함한 보험계약의 모든 현금흐름이 반영된다. 또한 K-ICS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위험조정이 아닌 위험마진으로 표현하며 생명 및 장기보험의 신뢰수준 85%로 평가한다. IFRS17의 위험조정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감독회계에서 신뢰수준 75% 이상으로 제시되어 위험마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한편 IFRS17은 평가요소에 보험계약마진이 존재하나 K-ICS는 보험계약마진이 평가요소로 존재하지 않고 자본에 내재적으로 반영된다. K-ICS는 손익

이 아닌 보험회사 자본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림 II-4〉 부채 평가요소 비교



이처럼 IFRS17과 K-ICS는 부채시가평가라는 개념은 동일하나 목적이 상이하여 평가요소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이후 설명할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에 의해 자본과 손익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감독회계

가. 개요

회계란 기업의 경영활동을 인식·측정·기록하여 재무적 정보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이다.³⁾ 회계를 통한 재무보고의 목적은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기업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즉, 회계에서 정보제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투자를 위한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다. 회계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회계의 목적이 적용된 일반회계(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⁴⁾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한편 보험업에서는 주주나 채권자 외에도 보험계약자라는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추가로 존재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행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그런데 보험상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오늘날 보험상품은 경쟁의 심화, 금융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전문성, 복잡성 등이 높아졌고, 부합계약⁵⁾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모두 이해한 후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보험업에서는 정보비대칭하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보호하는 감독당국에 의한 세부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감독회계(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⁶⁾가 운영되고 있다.

3) 회계기준위원회(2019)

4)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회계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감독회계를 적용함

5) 계약 당사자의 한 쪽이 계약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다른 한 쪽은 계약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없는 계약을 의미함

6) 감독회계(SAP)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비롯하여 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에 준거하고 있음

보험감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험업의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의 형식으로 감독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파산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위험보장 약속의 이행, 즉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한다. 보험감독의 주요 목적은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위험보장 약속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실적의 측정보다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의 평가를 중요시한다. 일반회계에서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손익계산서를 통해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 기업의 현재가치 추정을 우선으로 하지만, 감독회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청산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한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인 K-ICS 4.0에서 지급여력금액의 손실흡수성을 계속기업기준과 청산기준으로 구분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감독회계가 청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Ⅲ-1〉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 비교

구분	일반회계	감독회계
목적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재무건전성, 계약자보호 등 감독에 유용한 재무 정보의 제공
주요 정보 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감독당국, 보험계약자 등
가정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하에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보고를 통한 미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예측 능력, 재무정보의 종립성, 타 업권 간 비교가능성 등 중시	청산(liquidation) 가정하에 지급여력 측정능력, 재무정보의 보수성, 보험업 고유의 특성 반영 등 중시
주요 장표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지급여력목적의 재무상태표
관련 법규	외감법, 국제회계기준,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등 원칙 중심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 중심
작성주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감독당국

자료: 오창수(2015); IMF(2020)

나. 감독목적 재무회계 표시사항

현행 감독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 작성 시 일반회계 작성 기준과는 다르게 보험특성을 반영하여 자산을 운용·비운용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구분하고, 책임준비금도 세부항목으로 분류·표시한다. 또한 손익계산서 작성 시에도 보험회계에서는 생·손보 간 상이한 작성 양식을 규정하며, 영업이익을 영업 원천별로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하지만 IFRS17가 도입되면 감독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표시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감독회계에서는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표시하지만, IFRS17에서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구분만을 요구하고, 투자계약부채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및 보험손익 상세내역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공시정보의 충분성, 비교가능성뿐만 아니라 효익 대비 비용 등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III-2〉 현행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 재무상태표 비교

구분	일반회계	감독회계
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금융자산 3.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4. 유형자산 5. 투자부동산 6. 무형자산 7. 기타자산 8. 특별계정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운용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및예치금 2. 유가증권 3. 대출채권 4. 부동산 II. 비운용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정자산 2. 기타자산 III. 특별계정자산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부채 2. 금융부채 3. 기타부채 4. 특별계정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책임준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료적립금 2. 미경과보험료 3. 지급준비금 II. 계약자지분조정 III. 기타부채 IV. 특별계정부채

자료: 이태기(2018)

현행 보험회계에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를 모두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한 보험회사는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보험서비스는 보험계약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수익정보가 보험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RS17에서는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보험수익 산출 시 보험사건 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⁷⁾을 구분하여 표시함에 따라 손익의 원천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보다 수익인식 시기가 늦어지고 보험료 수익이 보험기간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신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회사 수익 인식 기준이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표 Ⅲ-3〉 현행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 손익계산서

일반회계(생보=손보)	감독회계(생보)	감독회계(손보)
I. 영업수익	I. 보험손익	1. 경과보험료
II. 영업비용	1. 보험영업수익	2. 발생손해액
III. 영업이익	2. 보험영업비용	3. 보험환급금
IV. 영업외수익	II. 투자손익	4. 순사업비
V. 영업외비용	1. 투자영업수익	5. 보험료적립금증가액
VI.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 투자영업비용	6. 계약자배당준비금증가액
VII. 법인세비용	III. 책임준비금전입액	7. 보험영업이익
VIII. 당기순이익	IV. 영업이익	8~10. 투자영업수익/비용
		11. 영업이익

자료: 이태기(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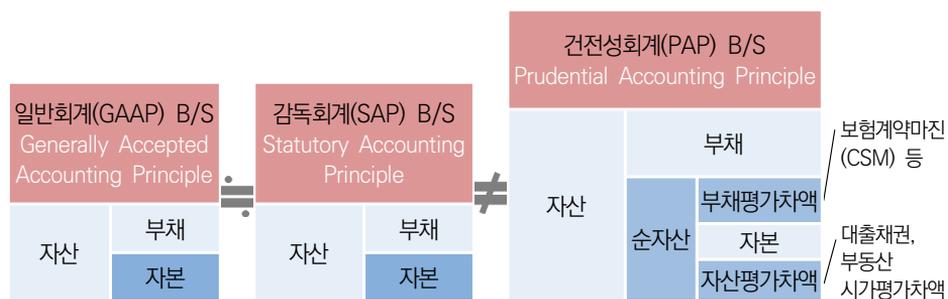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보험회계는 앞서 보았듯이 보험계약자보호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등 일반 감독목적 정보제공을 위한 감독회계(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와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회계(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로 나뉘어서 운영된다. 하지만,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설정한 감독회계 기준 외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 감독회

7) 자산의 투자수익 및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으로 인한 손익임

계와 일반회계가 일원화된 상태이다.

한편, K-ICS 도입에 따라 보험회계는 크게 3가지 체계로 구분될 예정이다. IFRS17을 적용하는 일반회계(GAAP), 감독목적에 위해 기준을 제시하는 감독회계(SAP), 그리고 K-ICS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기 위한 건전성회계(PAP)이다.

〈그림 III-1〉 보험회계 구분



감독당국은 K-ICS 및 IFRS17 시행 이후에도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실질적 일원화를 목표로 감독회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즉, 감독회계에서도 IFRS17과 동일하게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려는 계획에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행 감독회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다. 감독회계 주요 내용⁸⁾

보험감독회계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어 계리관련 사항은 감독당국이 정한 계리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보험감독회계는 보험료 수익인식 기준, 신계약비 이연상각, 책임준비금 적립, 계약자배당금 산출 및 적립, 비상위험준비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 수익인식) 현재는 보험료 회수 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IFRS17에

8) 보험업 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서 보험수익은 보험료가 아닌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 위험조정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익인식에 대한 감독회계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약비 이연상각)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된다.⁹⁾ 현행 감독회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미상각신계약비)한 후 7년간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 신계약비¹⁰⁾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신계약비는 이연하여 인식하되 간접신계약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계정으로 처리되었지만 향후 IFRS17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준비금 적립) 현재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판매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된 가정을 이용하여 적립하는 방식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과 계약자배당에 관련된 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성된다. IFRS17은 미래현금흐름에 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 등을 포함하고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에 대해서는 미래현금흐름에 계약자배당금을 반영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은 감독회계에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리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원가방식 책임준비금 적립을 보완하기 위해 IFRS4에서 도입되었다. 평가시점 할인율을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추가적립액은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동 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성 준비금) LAT 평가로 인한 추가적립액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써 주주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미처리결손금

9)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비례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되며, 유지비는 보험계약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세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됨

10) 설계사, 비례수당 등 특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으로 간접경비를 제외한 신계약비를 의미함

이 있는 경우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리한 이후에 적립이 가능하므로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회사는 추가적립액이 있더라도 적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동 제도는 2019년 말 평가부터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만 유효¹¹⁾한 한시적 규정으로 2022년부터는 평가하지 않는다.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이란 통상적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과 별도로 대재난,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비상위험에 대비해 쌓고 있는 준비금이다. 보험종목별¹²⁾로 구분하며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한다. 보험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을 활용하므로 이에 대한 계정과목을 계속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IFRS17에서는 관련 계정과목이 없어 별도로 설정하거나 현행 계정과목을 유지해야한다.

(특별계정) 현행 특별계정 표시기준에 의하면 퇴직보험,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은 감독규정에 의한 별도의 재무상태표 양식을 작성하여 공시하게 된다. 하지만 IFRS17의 도입으로 퇴직보험,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은 일반계정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측정 및 표시됨에 따라 특별계정 항목이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미실현손익을 주주배당가능이익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즉, 특별계정은 관련 손익이 모두 보험계약자의 몫이므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손익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하는 관계로 일반계정 항목들과 합산되어 주주배당을 실시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몫이 주주에게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계정은 관련 손익이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을 주주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별도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상채권) 구상채권이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채권을 말한다. 감독회계에서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¹³⁾ 이때

11)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2019-53호(2019. 12. 10)에 기술되어 있음

12)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함

회수가능액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여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구상채권은 보험 부채 평가 시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계정과목은 소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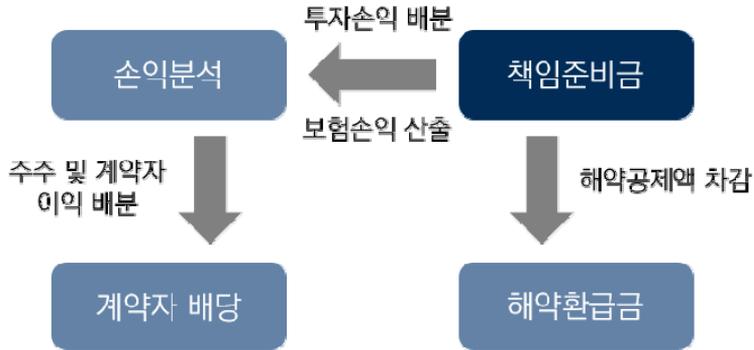
(계약자배당) 계약자배당이란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배당 계약은 장기 계약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설정된 가정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후에도 잉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계약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변경 없이 IFRS17을 도입할 경우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고, 시가방식의 책임준비금에 기반하여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손익의 경우 동일한 계정(일반계정)에서 운용되므로 투자손익을 유·무배당으로 구분하기 위한 적절한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감독회계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계리제도는 현재 원가방식의 책임준비금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의 보험료적립금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또한 손익분석에서 투자손익은 상품별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이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 이때 손익분석의 책임준비금에서 시장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보증준비금과 LAT추가적립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해약환급금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하여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자손익이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된다면 실제 투자재원이 아닌 책임준비금 변화에 따라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해 계약자배당금액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계약자배당금액은 부채 평가 시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배당금액 수준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 책임준비금 구성 요소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는 새로운 제도 도입 시행 전에 필요할 것이다.

13) 보험업 감독규정 제6-17조

〈그림 Ⅲ-2〉 계리제도 간 관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CS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감독회계를 구성하는 요인 중 책임준비금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과 중요성을 가진 계리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관련된 계리제도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한편,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일반회계기준 이외에 감독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별 보험회계의 보고체계는 (1) 감독당국 제출용과 일반 재무보고용 두 가지의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형태, (2) 일반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감독당국에서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거나 별도 서류를 첨부하는 형태, (3) 하나의 회계기준을 개발하여 감독당국용과 일반재무보고용 모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4) 감독회계규정이 보험회사의 재무보고 규정을 정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 보험회계는 1998년을 기점으로 (4)의 형태에서 형식상 (1)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완결된 감독회계를 둘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독회계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회계기준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호주 등은 통합된 기준을 운영하고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원화하여 별도로 운영된다.

국가별 운영 현황과 계리제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계리제도

가.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매년 납입 받은 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기초율(표준이율, 표준위험률)에 따라 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책임준비금은 예정기초율에 근거하여 예상부채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적립방식에 따라 부채금액 및 준비금 적립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의 부채로서 총 자산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책임준비금의 과소·과대계상에 따라 당기 누적손익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이유로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경영상태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산손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을 살펴보면, 1979년 이전에는 보험업계가 전체적으로 당기손을 시현함에 따라 전기 Zillmer¹⁵⁾ 방식(〈부록〉 참조)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출하였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결산지침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책임준비금에서 초과 사업비를 공제하고 준비금 적립 예정이율을 보험료 산출 시 예정이율에서 3% 이내로 더하여 별도 사용을 하고 부치준비금을 인정하는 한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보험회사들의 재무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기존의 준비금부담 경감조치가 폐지되고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¹⁶⁾이 시작되었으며 회사 실정에 따라 단기 또는 전기 Zillmer식으로 책임준비금 적립¹⁷⁾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최저준비금 기준이 해약환급금으로 변경되었고, 1984년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도의 도입으로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 후에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의

14) 금융감독원(2020)

15) 전기 Zillmer 방식은 초년도에 신계약비를 전액 계상하고, 계상된 순보험료를 보험료납입 전기에 걸쳐 동일하게 계상하는 방식이며, 단기 Zillmer식은 신계약비를 초년도에 전액 계상하고 초년도에 적게 계상된 순보험료를 전기 Zillmer식과는 달리 일정기간에 동일하게 계상하는 방식임

16)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와 지급보험금만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재에서 장래에 납입될 순보험료의 현가를 차감하여 계산됨. 동 방식은 책임준비금의 산정에 있어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평준순보험료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적립방식으로 평가됨

17) 구체적으로 단체보험, 5년 이하 양로보험, 중도보험금지급보험, 저축보험료의 순보험료 비율이 90% 이상인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순보험료식 적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경우에는 총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부터는 K율 방식으로 불리는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의 혼합비례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보험료 적립금 적립률은 매년 유지 또는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고 하향조정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K율 방식은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최저준비금을 7년 상각 해약환급금식으로 최대준비금은 순보험료식 준비금으로 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적립은 매 사업연도 말에 직전 사업연도 말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하고 확정배당 등의 소요액을 적립하고 난 후, 잔여액을 배당전잉여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국제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었고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 방식¹⁸⁾으로 통일되었으며, 예정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이연한 후 일정시간 동안(7년 이내)에 상각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러한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 1999년에는 발행년도 방식의 책임준비금제도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판매 후 금리와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 순유출액이 현재의 준비금적립액보다 클 경우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미국식 보험료결손제도(Premium Deficiency Test)가 도입되었다.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은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준비금 산정에서 과도한 기초율의 할인·할증 적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2004년에는 예정 신계약비를 한도로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IFRS4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과 대비하여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료결손제도를 대체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가 실시되었다. 또한 변액보험 및 일반계정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옵션을 평가하는 보증준비금제도도 시행되었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IFRS17 도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 대응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일부개정을 통해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였다.

18)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65조 제1호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때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69조 제2항은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는 제7-65조를 준용하여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III-4〉 국내 책임준비금 제도 연혁

연도	제도
~ 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Zillmer식(업계의 당기손시현) •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를 고려 매년 결산지침에 의해 탄력적 운용 • 초과사업비를 준비금에서 공제, 준비금적립이율 별도 사용, 부치준비금 인정
1979년 ~ 19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 적립이 원칙이나, 회사실정에 따라 단기 또는 전기 Zillmer식 적립 가능 • 단체보험, 5년 이하 양로보험, 중도보험금지급보험, 저축보험료의 순보험료비율이 90% 이상인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순보험료식 적립이 가능토록 함
1987년 ~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 혼합비례적립방식(K울 방식) • 보험료적립금 적립률은 매년 유지 또는 상향조정, 하향조정 불가
1999년 ~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 준비금에 의한 적립 • 예정신계약비의 이연 및 자산화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표준위험률 및 표준이율로 계산한 준비금이 최저기준임)
200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계약비는 예정 신계약비를 한도로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4 도입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LAT) 및 보증준비금 제도 시행
2015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폐지

국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관련 사항들은 일반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서, 감독회계기준(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두 회계처리방법상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감독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기업회계기준과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및 제6-11의 2조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¹⁹⁾ 미경과보험료적립금,²⁰⁾ 지급준비금,²¹⁾ 계약자배당준비금,²²⁾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²³⁾ 배당보험손실준비금,²⁴⁾ 재보험료적립금,²⁵⁾ 보증

19)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 및 위험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20)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납입방법별 순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순보험료를 의미함

21)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함

22)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배당금이 계약자에게 할당되었으나 현금지급, 보험료상계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 이차배당준비금, 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

준비금²⁶⁾으로 구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의 초기와 후기 사망률의 차이에 따라 실제 연령의 사망률보다 향후 사망률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양로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 규정하며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게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는 손해보험 종목별(자동차보험, 해외수재, 보증보험, 기타, 장기손해보험)로 지급준비금 적립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0조는 보험종목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의 산정과 적정성평가에 관한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와 제6-18조의 3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69조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적립금이 95%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지급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1~2% 수준으로 매년 증가 중에 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0.5% 이하로 매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등을 의미함

- 23)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계약자 몫으로 배분되어 장래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으로 현재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을 의미함
- 24) 배당보험손실준비금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배분되어 장래 유배당 손실발생 시 결손 보전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을 의미함
- 25) 재보험료적립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출제한 경우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 사업자가 적립하지 않은 책임준비금 전액은 재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함
- 26) 보증준비금은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함

〈표 III-5〉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료적립금	525,071 (96.0%)	557,111 (96.0%)	580,777 (95.8%)	598,347 (95.5%)	619,393 (95.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22	115	119	112	130
보증준비금	6,048 (1.1%)	6,179 (1.1%)	7,518 (1.2%)	9,597 (1.5%)	10,323 (1.6%)
지급준비금	12,236 (2.2%)	13,429 (2.3%)	14,279 (2.4%)	15,477 (2.5%)	16,696 (2.6%)
계약자배당준비금	3,178 (0.6%)	3,264 (0.6%)	3,025 (0.5%)	2,859 (0.5%)	2,794 (0.4%)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18	197	180	187	215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166	184	186	206	226
재보험료적립금	4	5	5	6	7
합계	547,043	580,486	606,089	626,791	649,784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적립금 비중은 생보보다 낮은 80% 수준이며 지급준비금이 10%,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8%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0.4%로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I-6〉 손해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료적립금	152,097 (81.4%)	166,435 (81.9%)	178,600 (82.2%)	189,166 (81.9%)	197,529 (80.6%)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5,528 (8.3%)	16,205 (8.0%)	16,875 (7.8%)	17,833 (7.7%)	19,537 (8.0%)
지급준비금	18,347 (9.8%)	19,619 (9.7%)	20,547 (9.5%)	22,642 (9.8%)	26,481 (10.8%)
계약자배당준비금	732 (0.4%)	795 (0.4%)	860 (0.4%)	938 (0.4%)	1,029 (0.4%)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08	123	166	193	201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79	86	103	135	166
합계	186,891	203,264	217,151	230,908	244,943

나. 해약환급금

1) 현황

해약환급금제도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1981년부터 순보험료식 준비금에서 예정신계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보험계약자보호와 신계약비의 간접규제를 위해 표준해약환급금제도가 도입되었다.²⁷⁾

〈표 III-7〉 국내 해약환급금제도 연혁

연도	제도
1969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지급하지 않음 • 1년 이상: 전기 Zillmer식 준비금의 80%
196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미만: 지급하지 않음 • 1년 미만에서 장기는 지급 않고, 단기는 전기 Zillmer식 준비금의 50% • 1년 이상: 전기 Zillmer식 준비금의 90%
197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Zillmer식 준비금의 90%
197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전기 Zillmer식 준비금의 90% • 3년 이상: 전기 Zillmer식 준비금의 100%
198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 준비금 - 예정신계약비 × (10-t) / 10
198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순보험료식 준비금 - 예정신계약비 × (10-t) / 10 • 3년 초과: 순보험료식 준비금 - 예정신계약비 × (7-t) / 7
2000년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하: 순보험료식 준비금 - 예정신계약비 × (y-t) / y • 7년 초과: 순보험료식 준비금 - 예정신계약비 × (7-t) / t

주: t는 경과연수, y는 상각기간임

〈표 III-8〉과 같이 1994년 4월 예정유지비의 자유화를 시작으로 2000년 4월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및 사업비차배당 자유화를 통해 보험가격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보험가격 자유화는 획일적 가격결정구조 적용에 따른 비경쟁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원리를 통한 가격·서비스 차별화를 기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보험계약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27) 남효성(1999)의 주요 내용을 참고함

〈표 III-8〉 보험가격 자유화 단계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시행 시기	1994. 4	1995. 4	1997. 4	2000. 4
보험료	예정사업비 중 유지비	-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계약자배당	-	위험률차 배당	이자율차 배당	사업비차 배당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신계약비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신계약비 사용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신계약비 부가정도에 따라 해약환급금 차이가 발생하였다. 신계약비 과다 지출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지나친 감소는 해약자의 불만 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통해 해약 시 일정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액을 보장하여 계약자의 최저환급금액을 보장하고 신계약비의 과다지출을 간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해약환급금제도는 2000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표준신계약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3가지로 보험금액 비례, 보험료 비례,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보험회사별 신계약비 부가방식에 따라 표준신계약비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적용 방식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표준해약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 III-9〉 표준 신계약비 한도

구분	예정신계약비율 한도(2000. 4)		
	보험가입금액 비례	보험료 비례	혼합비례
보험기간 5년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5/1000 \cdot S1 + 10/1000 \cdot S2$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50%	보험가입금액의 $2/1000 \cdot S1 + 4/1000 \cdot S2$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15%
보험기간 5년 초과	보험가입금액의 $15/1000$ $+5/1000 \cdot S1 + 10/1000 \cdot S2$ 단, 종신보험의 경우 $S2=S1$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80%	보험가입금액의 $6/1000$ $+2/1000 \cdot S1 + 2/1000 \cdot S2$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35% 단, 종신보험의 경우 $S2=S1$ 및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65%

주: S1은 일반 사망급여금 총 지급률, S2는 생존급여금 총 지급률임

하지만 다양하게 구분된 표준신계약비의 문제점 개선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3년 4월에 표준신계약비 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 방법으로 일원화²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기간은 20년이 최대이나 저축성 보험은 12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연납순보험료 산출 시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연납순보험료의 45%'로 적용한다.

〈표 Ⅲ-10〉 표준 신계약비 한도 변경

구분	한도
예정신계약비율	연납순보험료의 5% × 보험기간 + 보장성 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이후 감독당국은 상품별 보험기간 차별화를 위해 '보험기간'을 '해약공제계수'로 변경하고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해약공제액 산출방법을 다양화²⁹⁾하였다. 해약공제계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최대 20년의 보험기간을 적용하고 저축성보험은 최대 12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적용³⁰⁾하지만, 일시납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 연납순보험료 계산 시 보장성보험은 전기납³¹⁾으로 조정하고,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최대 10년) 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평균식 부가보험료를 제외하였다.

28)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5'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을 참고함

29)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4'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을 참고함

30) 보험상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납입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별도의 납입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함

31)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20년납으로 함

〈표 Ⅲ-11〉 상품별 표준해약공제액

구분	표준해약공제액
일반적인 상품	연납순보험료의 5% × 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장기손해보험상품의 단일보험료적용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	연납순보험료의 5% × 해약공제계수 + 연납순보험료의 45%
보험기간 종신인 생존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제외)	Min(연납순보험료의 6%, 연납순보험료의 5%×12년)
연금저축보험	연납순보험료의 4%(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은 3%)
실손의료보험	연납순보험료의 5% × 해약공제계수 + 연납위험보험료의 15%

주: 1) 연납위험보험료 계산 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9호 단서의 위험보험료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부가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부가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표준해약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해약환급금 산출방식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최대 7년 동안 차감하는 방식³²⁾을 사용한다.

최저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V)에서 표준해약공제액(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며 해지 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 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며 최대 7년을 한도로 적용한다.

$${}_t W = {}_t V(N) - \frac{12 \times y - t'}{12 \times y} \times \alpha \quad (1)$$

단, W : 해약환급금, $V(N)$: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t' : 납입경과 월수, y : 해약공제기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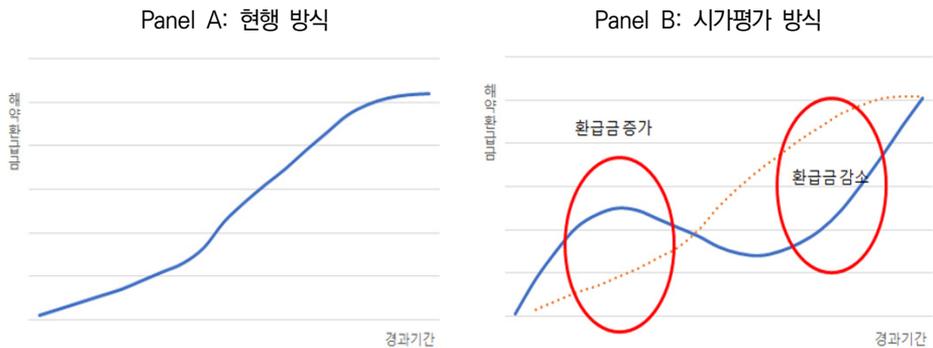
한편,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 상품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식 (1)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2) 보험업 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과 제3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개선점

현행 해약환급금제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과 연동되어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을 제도 변경 없이 시가평가 보험부채와 연계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평가시점 가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라도 해약시기에 따라 계약자 간 해약환급금이 상이하여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약환급금의 변동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규모 및 지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여 자산운용, 손익관리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III-3〉 해약환급금 비교 예시



현행 해약환급금제도는 사업비(해약공제액)의 상각기간이 최대 7년으로 제한되어 사업비를 전 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는 시가기준 부채평가 제도의 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즉, 해약공제액 상각기간이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의 도입에 따라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이미 도입되어 모든 보험상품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손익분석

1) 현황

손익분석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아래서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을 보험손익, 투자손익, 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손익의 금액과 원인규모를 분석하는 것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손익분석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인 잉여금 변동내용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료 산출기초자료와 대비하고 분석하여, 잉여금의 변동내용 및 발생의 원천을 파악하고 계약자배당,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검토 등 정책입안 및 집행의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한편 계약자 및 주주 간의 손익배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1987년 이전까지는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수익에 대한 이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 보험료 산출기초 및 상품개발지침(재무부, 생보22330-200)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시 상품별 평가와 이원분석의 수행이 의무화되었다. 한국보험공사가 생명보험 이원분석지침(한국보험공사, 생심560-4310)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이원분석제도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손익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손익변동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료 산출, 언더라이팅, 재보험 출재 등에 이원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보험회사가 손익분석에서 사용한 이원분석방식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 등 3이원에 대해 보험수리기법 및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지급률, 실제 사업비율, 실제이율을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과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험률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이자율차손익 등 3개 원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³³⁾ <그림 III-4>는 3이원방식의 보험료 산출 및 손익분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3)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위험률은 실제발생률에 통계적 안전할증을 더하여 산출되며, 예정이율은 장기간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할인율로 사용되며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결정되고, 예정사업비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보전에 사용되는 경비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결정됨

〈그림 III-4〉 3이원방식 보험료 산출 및 분석과정

수입 (보험료)	=	위험보험료 (예정위험률)	+	저축보험료 (예정이율)	+	부가보험료 (예정사업비율)
지출		보험금 등 지급 (실제위험률)		만기·중도 환급금 (실제이율)		실제사업비 (실제사업비율)
이원분석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		↓		↓		↓
계약자배당 (이익발생 시)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자료: 김태훈(2014)

1987년 이후에 3이원분석제도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되어 계속 시행되다가 보험료 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보험환경에 정합성을 제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2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과 손익분석 방식이 도입되었다.³⁴⁾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존 3이원방식에서의 가격요소 이외에 계리적 요소인 계약유지율, 투자수익률 뿐 아니라 마케팅 요소인 상품가격, 판매량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자율성 증대와 보험계약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현금흐름방식 도입 이후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은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4월부터는 현금흐름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손익분석에 관련된 국내의 규정들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7-80조(손익분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4조(손익분석), 별표16(손익분석기준) 등에 정해져 있다. 손익분석의 분석대상 손익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퇴직보험 포함)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 잉여금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이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다.

손익분석은 먼저 계정별(일반계정과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34) 3이원방식 보험료 산출 체계는 투자수익률, 해약률, 물가상승률, 세율 등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기간손익이 왜곡되고 손익관리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비해 현금흐름방식은 다양한 가격요소를 최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수익성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이후 계정별 손익은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된다. 이때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세분하여 상품별로 산출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하여 표시된다.

한편,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총 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보험회사는 동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표 Ⅲ-12〉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 기준

구분		선정 기준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총 자산 규모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유배당보험 비중	책임준비금 중 유배당보험 비중이 10% 이상
	장기투자자산 규모 및 평가이익	장기투자자산 규모가 운용자산의 5% 이상 평가이익률이 과거 3년간 누적 운용자산이익률 초과
	지속기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유배당보험 비중	책임준비금 중 유배당보험 비중이 10% 이상
	장기투자자산 평가이익	장기투자자산 평가손실 발생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은 손익요소별로 보험부문손익, 투자부문손익, 기타손익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로 추가분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보험부문손익의 세부 항목으로 재보험관련손익, 위험보험료 및 순위험보험금이 추가된다.

한편, 보험부문손익의 책임준비금에서는 IFRS17과 유사하게 평가하는 보증준비금과 LAT 추가적립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기타손익에서 보증준비금과 LAT 추가적립액 증감이 반영되고 있다.

투자부문손익의 세부항목은 책임준비금해당 투자부문손익, 경상투자손익, 비경상투자손

익으로 구성되고 기타 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하며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자산운용관련손익은 평균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표 III-13〉 손익요소별 작성내용

손익요소	작성내용
가. 보험부문 손익	
(+) 보험부문수익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보증준비금전입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 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 관련
(-) 위험관련지급금	
(-) 실제사업비	보험상품별로 산출한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가-1. 재보험관련손익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재보준비금증가
가-2.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 [보험연도 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1 + 적립이율) - 전 보험연도 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가-3. 순위험보험금	위험관련지급보험금 - 위험관련준비금 + 납입면제보험료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변액보험 등 운용수수료 별도 수취 상품의 재산관리비 제외
(-) 책임준비금 이자	
나-1. 책임준비금 해당 투자부문손익	투자손익 - 자본계정운용손익 - 책임준비금 이자
나-2. 경상투자손익	투자영업수익 중 경상적 부분(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수수료수익, 금전신탁이익, 대손충당금환입, 신탁보수, 기타투자수익 등) - 투자영업비용 중 경상적 부분(재산관리비, 금전신탁손실,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부동산감가상각비, 기타투자비용등)
나-3. 비경상투자손익	투자손익 - 경상투자손익
다. 기타 손익	운용수수료 관련 수익 및 보증수수료 관련 수익 - 운용수수료 관련 비용 및 보증수수료 관련 비용 + 기타 영업의 수익 - 기타 영업의 비용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 관련 항목 - 운용수수료 관련 재산관리비 - 보증준비금증감 - 보증 관련 지급보험금 - 보증 관련 책임준비금전입액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증감 + 해지 당시 기준책임준비금 - 해지환급금 등

주: *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 관련 책임준비금전입액
책임준비금에서 보증준비금 및 LAT추가적립액 제외함

투자손익의 배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은 자본계정에서 운용된 손익을 먼저 배분 후 잔여액을 책임준비금 해당 손익으로 처리한다.

책임준비금 해당투자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여,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이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 III-14〉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투자손익 배분

자본계정 운용손익	책임준비금 해당 투자손익
투자손익 $\times (\text{자본계정금액}^1) - \text{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2)^3$ $/ (\text{자산총계}^4 - \text{미상각신계약비})^5$	투자손익잔여액 $\times \text{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 / \text{평균책임준비금}^*$ $* \text{평균책임준비금}$ $= (\text{기초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5)$ $+ \text{기말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5)$ $/ (2 + \text{평균적립이율}^6)$

- 주: 1) 자본계정금액은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하고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중 신계약비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금액-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는 자본계정 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중 신계약비 해당액은 (평균보유미경과보험료적립금×실제신계약비/보유보험료)임
 2)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 중 '99. 3. 31 이전 자산재평가 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함
 3)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 식에 의한 금액으로 함
 $[\sum(\text{매전월말금액} + \text{매당월말금액})] / 24$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의 결산월의 당월 말 금액은 전월 말 금액으로 함
 4) 자산총계는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약자지분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보험미수금 및 재보험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5)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은 제3호의 가목의 (1)의 (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중 신계약비 해당액, 재보험료적립금 및 출재보험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이 부치인 경우는 해당 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함
 6) 평균적립이율은 (기초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 적수+기말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 적수)/(기초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기말 투자손익 관련 책임준비금)임
 * 책임준비금 적수는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한 이율×책임준비금임. 다만, 책임준비금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각신계약비에 적용하는 이율은 해당 책임준비금의 적립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개선점

현재 시행중인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CFP)방식은 3이원방식의 보험료 산출에 회사별 최적기초율에 의한 상품별 수익성 분석을 추가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보험회사는 3이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의 손익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경영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IFRS17 이후에는 수익이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인식하도록 변경되고 수익 구성요소는 보험계약마진의 상각, 위험조정변동, 최선추정부채의 변동, 경험조정 등으로 변화되므로 3이원방식의 손익분석은 전기 대비 손익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보험회사의 수익이 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예상보험금 지급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예상과 실제 보험금 지급과의 차이가 크다면 손익 변동성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된다. 또한 IFRS17에서는 별도 산식에 의하지 않고도 손익계산서상에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현행 손익분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손익분석은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변화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계약자배당을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계약자배당

1) 현황

계약자배당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 경영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에서 실제 사업의 결과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로 사용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산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선취한 후 발생한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의 형태로 유배당 상품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내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제도는 1965년에 예정이율과 은행 예금금리와의 현격한 차이 인해 생명보험상품의 경쟁력 회복과 해약에 따른 자금유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1965년

에 특별배당제도³⁵⁾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특별배당금의 예정이율을 은행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의 3%를 배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은행예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특별배당금율도 계속 인하 조정되다가 1972년 8월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특별배당제도의 폐지 후 은행예금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확정배당제도가 1979년에 도입되었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계약자배당은 1984년에 실시된 위험률차배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위험률차익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보험소비자의 환급압력에 대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3이원 중 우선적으로 위험률차익을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1986년에는 생명표가 조정국민생명표에서 간이경험생명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약을 대상으로 조정국민생명표와 간이경험생명표와의 사망률 차이를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정산배당이 실시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보험회사의 이익 증가를 가져와 1988년부터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시기부터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구분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다. 1990년에 들어서는 사업연도방식에 나타난 공평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에 보험연도방식이 도입되었다.³⁶⁾ 1991년에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은 최소의무배당을 실시하였고 배당 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담보력 확보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위험률차, 이자율차배당은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배당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사업비차배당이 도입됨으로써 마침내 3이원별 계약자배당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되었다.

계약자배당제도는 과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와 함께 일정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자율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 중 장기보험에 대해 전면 자유화가 되었고, 2002년 3월 사업비차익 배당이 자유화됨에 따라 현재 배당률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계약자배당금은 이원별로 산출되기보다는, 유배당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각 이원별 손익 기여도

35) 특별배당금의 재원은 매년 결산 시에 계산하여 특별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해약 시에 해약환급금, 사망 또는 만기 시에 보험금의 지급 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음

36) 사업연도방식은 매 사업연도 말 유효한 계약자에 대해 결산잉여금을 동시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성과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험연도방식은 개별 보험계약 해당일에 결산잉여금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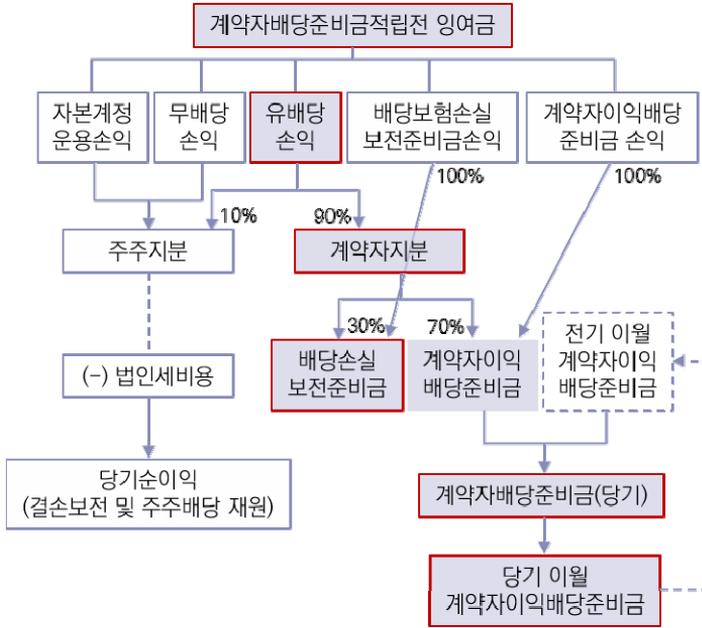
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은 회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I-15〉 국내 계약자배당 제도 연혁

연도	제도
1965년 ~ 197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배당제도 실시 • 보험예정이율과 은행 금리 간 차이를 보상
197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배당 도입 • 보험예정이율과 은행 정기예금이율 차이를 배당금으로 지급 • 1993년 금리차보장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1997년 이차배당으로 흡수됨
198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률차배당 도입
1985년 ~ 19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배당 시행 (생명표 변경(조정국민생명표 → 간이경험생명표)으로 인한 차이 정산)
198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도입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당보험 도입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차배당 도입 • 3이원(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별 배당제도 완료

국내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 유배당보험손익, 계약자지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순서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제6-13조의 2, 제6-14조는 계약자배당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매 회계연도 말에 보험손익, 투자손익, 기타손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인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을 유·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 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 부분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보험회사는 산출된 계약자지분의 30% 이내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 70%는 전기 이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합산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구성해야 한다.

(그림 Ⅲ-5) 국내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산출과정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이자율차배당,³⁷⁾ 위험률차배당,³⁸⁾ 장기유지 특별배당³⁹⁾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뜻한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에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에도 남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5년 이내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부채계정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속한다. 1989년 4월 A사와 1990년 2월 B사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1990년 8월에 재무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주주와 계약자 간 배분

37) 보험회사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수행하여 보험예정이율보다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전 보험사업연도 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x 이차배당률'로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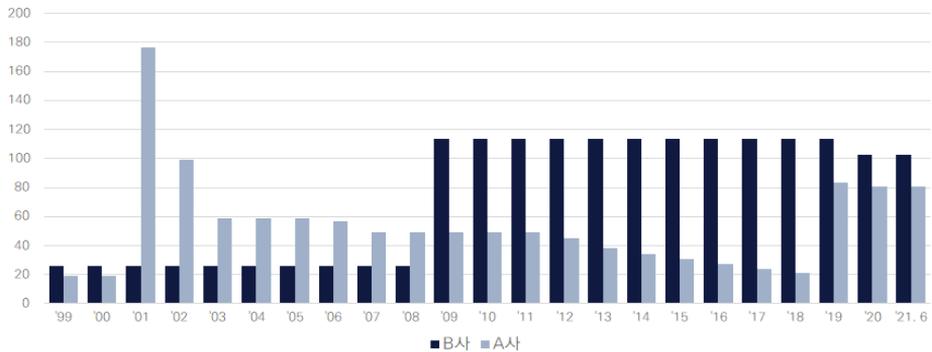
38) 보험회사가 판매상품에 적용한 위험율과 실제 위험과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 배당금임

39) 6년 이상 유지한 장기유지 건에 대한 우대조치로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특별배당금을 의미하며 장기유지 배당금의 재원은 주식, 부동산의 평가이익 등으로 충당하였음

을 실시하였다. 당시 보험업법 제7조 제3항은 배분된 계약자 지분의 1/3은 공익사업출연 기금으로, 나머지 금액의 반은 계약자에 대한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계약자 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직전 회계연도 수준의 계약자배당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보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 등 배당재원으로 활용되는 다른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들과 달리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은 지급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자지분으로 직접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III-6〉 배당안정화준비금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음으로 계약자배당금의 할당방식을 살펴보면, 이원별 배당, 자산할당, 경험보험료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원별 배당은 이익의 원천별(이차익, 사차익, 비차익)로 잉여금의 발생에 각 계약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구분된다. 동 방식은 위험률, 이자율 및 사업비율에 대해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구하여 요소별로 배당액을 결정하고 배당총계가 배당가능 잉여금이 되도록 각각의 이원배당율을 조정한다. 식(2)는 3이원방식의 계산방법으로 V_t 는 t 시점의 책임준비금, P 는 보험료, C 는 사업비, r 은 이자율, d 는 사망자 수를 나타내며, 위첨자 A 는 실제치, E 는 예측치를 나타낸다.

$$(V_{t-1} + P + C^A - C^E)(r^A - r^E) + (C^A - C^E)(1 + r^E) + (d^A - d^E)(S - V_t) \quad (2)$$

둘째로, 자산할당방식은 보험종목, 연령 등을 모델로 설정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실제이율, 사망률, 사업비비율 등을 기초로 수지계산을 한 후 수지잔액과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배당금을 산정하고 이와 유사하게 이원별 배당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산할당은 자산형성의 계약단위당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보유계약 한 단위당 할당된 자산과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계약자배당금으로 결정한다. 동 방식은 이원별배당방식과 달리 이익의 원천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원별로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배당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자산할당 방식은 자산할당과 계약자에 대한 부채(책임준비금)를 비교하여,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⁴⁰⁾ 식(3)에서 A_t^k 는 생명보험상품 k의 단위계약에 대하여 해약률을 고려한 자산할당액, P는 보험료, V는 순보험료, w는 해약률, W는 만기급부, q는 사망률을 의미한다.

$$A_t^k = \frac{(A_{t-1}^k + P_t^k)(1 + r_t) - V_t^k - q_t^k - w_t^k W_t^k}{(1 - q_t^k)(1 - w_t^k)} \quad (3)$$

셋째로 경험보험료 방식은 위험률과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경험보험료와 영업보험료의 차액과 이차익 부분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이차율, 위험률, 사업비율로 계산된 경험보험료를 통해 축적된 연초의 자금 및 이차에서 보험금과 지출경비, 필요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결정한다. 동 방식은 사망률과 사업비율에 대한 간접적인 예측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대되는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험보험료 방식의 계산에 대한 식(4)에서 P는 보험료, r은 이차율, F는 연초 보유자금, C는 지출경비를 의미하며, 위첨자 A는 실제치, E는 예측치를 나타낸다.

$$(P^A - P^E)(1 + r^A) + (r^A - r^E)(F + P^E - C^E) \quad (4)$$

40) 자산할당금액 > 책임준비금인 경우는 과소배상, 자산할당금액 < 책임준비금일 경우 과대배상을 의미함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이외의 계약자배당 결정방식으로는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래의 보험금을 증액하는 보험금균등증액배당방식, 일정기간 유지하는 계약에만 배당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약한 계약자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 금액을 계약자배당금 재원으로 전입시키는 거치배당,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보험료누가배당, 매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이 보유계약이 소멸되거나 해약될 때 계약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을 청산형태로 지급하는 일률보험금증액식 배당방식 등이 있다.

〈표 III-16〉 계약자배당금 결정방식

구분	특징
이월별배당	이익의 원천에 따라 예정보험료와 실제보험료의 차이를 원천별로 배당하여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구분하여 지급
자산할당	계약당 자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보유계약 한 단위당 할당된 자산과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계약자배당금을 결정
경험보험료	실제사망률과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경험보험료를 산출하고 영업 보험료와 경험보험료의 차액과 이차익 부분을 배당
보험금균등증액배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래의 보험금을 증액하는 방식
거치배당	일정기간 유지하는 계약에만 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멸계약은 배당에서 제외
보험료누가배당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
일률보험금 증액식 배당	보유계약이 소멸되거나 해약될 때 계약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을 청산형태로 지급

계약자배당은 유배당보험상품에만 해당되나 현재 생보사 보험료적립금 중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높지 않다. 무배당상품은 1992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2000년 전체 보험상품으로 무배당보험이 허용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지급하는 유배당보험은 개인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신규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림 III-7〉 생보 보험료적립금 중 유배당보험 비중

(단위: %)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한편,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에는 공평성, 탄력성, 간명성, 계속성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공평성은 계약자 간 배당금액의 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특정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탄력성은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에 있어 경영실적이나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잉여금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간명성은 공평성과 탄력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들이 배당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배당방식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계속성은 보험계약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회사가 선택한 배당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은 서로 상충되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4가지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배당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정봉은 외 1997).

2) 개선점

계약자배당은 예정기초율과 실제값과의 차이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사후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IFRS17의 경우 매 결산 시마다 위험률, 사업비율, 할인율, 해약률,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대한 최적가정(best estimate)을 기초로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게 되므로, 최적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위험률에 대한 최적가정

이 변경될 경우 장래 지급보험금이, 사업비율에 대한 최적가정은 장래 사업비 지출액에, 그리고 해약률 가정의 변경은 장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변경되는 등 다양한 기초율에 대한 가정변경 영향이 유배당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IFRS17에 따른 유배당보험의 손익을 재원으로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배당은 최적가정 변경에 따라 지급되게 되므로 계약자배당이 예정기초율과 실제치의 사후정산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장기투자자산, 유형자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투자수익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자배당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 평가에 따른 손익도 자산의 평가손익과 마찬가지로 미실현손익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준비금 평가손익을 계약자배당재원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소지가 있다. 또한 평균 책임준비금에 기반한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적용한다면 금리 변동에 의한 부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안정적 배분기준에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과거 고금리 유배당 계약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자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실제 투자에 기여한 부분과 상관없이 평가시점의 책임준비금 규모에 따라 투자손익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준비금 평가방식 변경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배당의 취지와 부채시가평가를 하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해외 국가별 계리제도

1. 캐나다

가. 책임준비금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y Act)을 기초로 캐나다 계리사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CIA)가 제정한 실무기준(Standards of Practices)⁴¹⁾과 모범기준(Educational Note)⁴²⁾을 따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을 평가한다. 캐나다의 책임준비금 평가 방법으로는 1977년까지 순보험료 방식이 적용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계산과 다양한 변수의 적용이 가능하여 사망률 이외의 사업비 배부기준, 투자전략, 고객유지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캐나다방식(Canadian Method)이 사용되었다. 이후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손익의 민감도 분석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2년부터는 영업보험료 방식이 사용되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CALM(Canadian Asset-Liability Method)이 시행되고 있다.⁴³⁾

CALM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분석한 후 부채현금흐름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기시점의 누적 순현금흐름이 '0'이 되도록 최초 자산을 설정하고,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방법이다. 즉, 보험부채의 준비금 계산 시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한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을 따르며, 신계약비는 이연 없이 모두 비용처리 한다. CALM의 평가방법은 크게 4가지 단계를 따른다. 1단계에서는 최선추정에 의한 예측시나리오⁴⁴⁾를 설정하여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추정한 현금흐름에 대한 변동위험을 고려함으로써 금리 위험을 제외한 PAD(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 역편차마진준비금)를 추가한다. 3단계에서는 금리 위험에 대한 PAD

41) 실무기준은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최선추정치 및 위험마진 등의 계산을 위한 지침사항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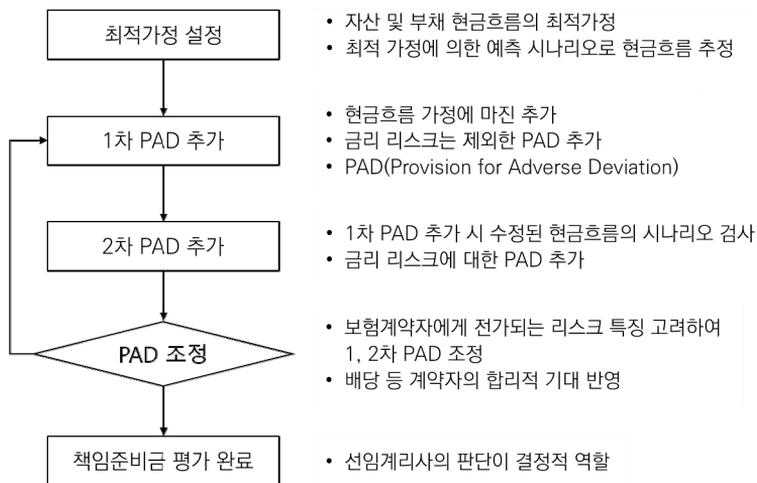
42) 모범기준은 보험회사에 속한 계리사 지원목적의 해설서임

43) 이장희·김동겸(2007)

44) 예측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위험률, 사업비율, 해지율 등에 대한 최선 추정치를 산출함

를 추가하여 9개의 금리시나리오를 통해 부채가 소멸할 때까지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최종 연도의 누적 잉여금이 '0'이 될 때까지 자산을 증감시켜 초기 자산액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현금흐름 산출에 계약자배당을 반영하여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리스크를 고려해 2, 3단계에서의 PAD를 조정한다.

〈그림 IV-1〉 캐나다식 자산부채 평가법(CALM) 프로세스



자료: 삼일회계법인(2007)

나. 해약환급금

캐나다의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상품 판매 시 급부(Guaranteed Cash Value)의 일종으로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도 존재한다. 다만, 지급여력제도(LICAT)⁴⁵⁾에서 해약환급금 부족분을 가용자본에 반영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 부족분(Cash Surrender Value deficiencies)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차감액 중 75%는 보완자본에 가산한다. 이때 해지환급금 부족분은 해지환급금에서 시가 평가 보험부채(보험부채 = 최선추정치(BE) + 역편차마진(Margin for Adverse Deviations))을 차감한 값으로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캐나다는 개별 상품 판매 시 해약에 대한 보장급부(Guaranteed Cash Value)의 일종으로

45) OSFI(2018)

해약환급금을 제시한다. 이때 보장급부는 최저로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의 개념이며, 유배당상품의 경우 투자수익에 따라 비보장급부의 해약환급금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계약자의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투자수익으로 인한 배당에 따른 급부가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반영한 순계약비용(Net Cost of Pure Insurance: NCPI)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캐나다 해약환급금 산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신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예시를 살펴본다. <표 IV-1>에서는 사망보험금이 600,000달러이고, 연납보험료가 10,692달러인 상품의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급부 및 보장급부와 비보장급부를 합산한 금액을 각각 보여준다.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서는 보험계약연도와 연납보험료를 나타내었고,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에서는 보장급부의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장급부의 해약환급금은 사업비로 인해 6년간 제공되지 않으며,⁴⁶⁾ 보장급부의 사망보험금은 일정한 금액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열과 여섯 번째 열에서는 보장급부와 비보장급부로 인한 총 해약환급금과 총 사망보험금을 나타내는데, 본 예시는 투자 수익이 충분히 높아 계약자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로 배당은 보험계약을 추가로 구매하는 형태로 계약자 적립금에 쌓이고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은 증가하게 된다. 즉, 비보장급부에서의 해약환급금은 1차년에도 1,740달러가 존재한다. 7차년부터는 보장급부의 해약환급금도 존재하여 7차년에는 보장급부 5,400달러를 합산하여 총 해약환급금 22,478달러가 존재한다.

46) 보장급부가 0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해약에 대한 유인이 대폭 감소함

〈표 IV-1〉 캐나다 종신보험상품의 연도별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단위: 달러)

구분		보장급부		보장급부 + 비보장급부	
연도	연납보험료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총 해약환급금	총 사망보험금
1	10,692	0	600,000	1,740	617,227
2	10,692	0	600,000	3,577	633,750
3	10,692	0	600,000	5,509	649,637
4	10,692	0	600,000	7,509	664,873
5	10,692	0	600,000	9,718	679,654
6	10,692	0	600,000	12,935	700,267
7	10,692	5,400	600,000	22,478	726,508
8	10,692	12,600	600,000	35,000	757,752
9	10,692	20,400	600,000	49,423	793,486
10	10,692	28,800	600,000	65,472	833,576
20	10,692	147,000	600,000	360,484	1,437,190

자료: Coleen Clark(2018)

다. 손익분석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는 보험회사 이원에 대한 공시를 2004년부터 시행하였다.⁴⁷⁾ 손익분석은 보험회사 당기손익의 이원을 파악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이원분석을 통해 어떤 요소에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쉽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 평가 가정의 변경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나타낼 목적으로도 손익분석을 실시한다.

캐나다 손익분석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기 말 기준으로 전기 말에 사용한 준비금 평가 가정과 실제 발생한 경험실적과의 차이로 인한 실현손익이고, 두 번째는 당기 말 이후의 미래에 발생 예정 손익으로 준비금 평가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추정손익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보험회사는 손익을 아래 5가지 항목으로 이원 분석하여 공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7)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이 이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Source of Earnings Disclosure)을 공표함(OSFI 2010)

〈표 IV-2〉 캐나다의 5대 이원분석 항목

항목	설명
예상손익(Expected Profit)	책임준비금에 포함된 PAD의 변동(환입)으로 인하여 발생함
경험손익 ⁴⁸⁾ (Experience Gains and Losses)	전기말 시점에 사용한 최선의 추정가정과 경험실적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가정변경에 의한 손익 ⁴⁹⁾ (Changes in Assumptions and Other Changes)	책임준비금 평가가정 및 경영정책의 변경에 의해 발생함
신계약의 영향(Impact of New Business)	분석기간 동안 인수된 신계약에서 보험료 수입과 책임준비금 발생비용의 합과의 차이로부터 발생함
잉여금의 투자수익(Income on Surplus)	잉여금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임

한편 캐나다 금융감독청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일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혹은 폐지를 검토 중으로 이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23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⁵⁰⁾ 이에 대한 이유는 IFRS17의 보고양식에는 이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이원에 대한 공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계약자배당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법에서 배당상품(Participating Policy)의 운영과 계약자배당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금융감독청은 가이드라인⁵¹⁾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상품계정(Participating Account)을 설정해야 하고, 배당상품계정에서는 타계정으로의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배당상품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공정(fair)하고 형평성(equitable) 있는 배분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배당상품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주주와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는데, 배당상품계정의 총 규모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잉여금 비율은 10% 내외로 차등 적용된다.⁵²⁾ 일반적으로 배당상품계정의 규모가 클수록 주주

48) 경험손익을 세분화하여 위험률차·이자율차·사업비차·해지율차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공시 여부는 보험회사 재량임

49) 캐나다에서는 시가평가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므로 이원분석의 결과를 준비금 평가가정 변경의 근거로 사용함

50) <https://www.osfi-bsif.gc.ca/Eng/fi-if/rg-ro/gdn-ort/gl-ld/Pages/ifrs9-let21.aspx>

51) OSFI, Guideline: Subject: Participating Account Management and Disclosure to Participating Policyholders and Adjustable Policyholders, Category: Sound Business and Financial Practices, No: E-16, 2011. 11

가 가져갈 수 있는 잉여금 비율의 한도는 작아지게 된다.

캐나다의 계약자배당 방법은 정기배당과 소멸배당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다. 소멸배당은 사망, 만기 및 해약 시에 지급되는 배당으로 정기배당을 통해서 배분되지 않은 계약자 잉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소멸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여도 원칙⁵³⁾(Contribution Principle)을 채택하여 배당할당을 하고 있으며, 기여도 원칙은 예상기초율과 실제기초율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들⁵⁴⁾이 개발되어 왔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3이원방식(Source of Earnings Method)을 채택하고 있는데, 3이원방식에서는 배당의 재원이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 등 3이원에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배당할당이 이루어진다. 계약자배당을 위한 분배가능 잉여금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분배가능 잉여금} &= (\text{실제수익률} - \text{예정이율}) \times (\text{전기 책임준비금} + \text{순보험료}) \\ &+ (\text{예정사망률} - \text{실제사망률}) \times (\text{보험가입금액} - \text{당기 책임준비금}) \\ &+ (\text{영업보험료} - \text{순보험료} - \text{실제경비}) \times (1 + \text{실제수익률}) \end{aligned}$$

계약자배당은 책임준비금에 실제수익률을 곱하는 형태로 결정되는데, 자산운용 수익률과 시가방식의 책임준비금은 매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지나친 변동을 막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Policyholder Reasonable Expectations: PRE)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실제기초율을 매년 변동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평활화(Smoothing) 방안을 사용한다.⁵⁵⁾ 현재 캐나다 보험회사는 공정성, 형평성, 예측 가능성(합리적 기대)을 원칙으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52) Insurance Companies Act 461

53) 기여도 원칙이란 계약자배당 시에 배당가능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이 공헌한 기여도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보험회사가 기여도 원칙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원인과 차이점을 문서로 만들어야 함

54) 3이원방식, 자산할당방식, 경험보험료방식, 펀드방식, 환원보너스방식, 비율보험료방식 등이 있음

55) CIA(2014)

2. 호주

가. 책임준비금⁵⁶⁾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에 따라 호주의 금융감독당국 APRA가 제정하는 감독회계 기준(LPS 340)과, 국제회계기준 IFRS를 기초로 호주회계기준심의회(AASB)가 제정하는 일반회계 기준(AASB1038)에 의해 규정되는데, 호주의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일원화되어 있다. 또한 호주는 Superannuation이라 불리는 개인 계좌방식의 퇴직급여 적립제도가 크게 발달하여 저축상품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⁵⁷⁾

호주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부채는 최선추정부채와 장래이익현가로 구성된다. 최선추정부채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최선추정 가정에 따라 할인한 값이다. 즉, 보험료, 보험금뿐 아니라 비용, 해약급부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영업보험료식을 취하고 있으며, 안전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최선추정 예측에 따라 평가 시점의 투자수익률, 위험률 등의 최선추정치 사용한다. 장래이익현가는 주주 및 계약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의미하는데, IFRS17의 보험계약마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Profit Margin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적절히 부채에서 상각되면서 이익으로 인식된다. 즉, 평가시점의 할인율 가정 등 새로운 가정에 따라 Profit Margin을 재평가하고 이에 따라 장래이익현가를 재평가한다.

나. 해약환급금

호주의 해약환급금은 생명보험법에 따른 계리기준⁵⁸⁾에 근거하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청산가치(Minimum Termination Value) 산출의 기반이 된다. 최소청산가치는 최저해약환급금 이상이어야 하고 계리기준에서 최저해약환급금 수준을 제시한다.

호주의 사업비 체계는 초기부과비용(front end charges), 유지비용(ongoing charges), 해지비용(back end charges)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약환급금에는 초기부과비용과 해지비

56) APRA(2012a)

57) 이장희·김동겸(2007)

58) Life Insurance Actuarial Standards Board(2002)

용에 의한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규정은 동 비용들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실제 비용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최저해약환급금 산출방법은 3가지 상품유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유형 안에서도 계약의 세부 성질에 따라 계산 기초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상품유형은 투자형, 전통형, 연금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 성질은 납입방법(일시납/비일시납), 배당유무(유배당/무배당), 퇴직연금 여부(직장가입 퇴직연금/일반)을 반영하도록 제시되어 있다(〈표 IV-3〉 참조).

〈표 IV-3〉 호주의 최저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상품유형	산출방법
① 투자형 상품	$\text{최저해약환급금} = \text{Max}(\text{계약에서 정한 최저금액, } \underbrace{\text{표준금액}}_{\text{(기납입 보험료 관련 금액) - (비용 관련 공제금*)}})$
② 전통형 상품	$\text{최저해약환급금} = (\underbrace{\text{장래 급부의 현재*} - \text{장래 순보험료의 현재*}}_{\text{(보장금액 + 소멸배당 가산액)의 현재}}) \times \text{특정 비율*}$ $\text{총 소멸배당} - \{ \text{계약 발행일} - \text{Min}(3\text{년, 해약환급금 계산일}) \text{에 배당된 소멸배당} \}$
③ 연금형 상품	$\text{최저해약환급금} = \text{Min}(\underbrace{\text{기대 지급급부의 현재*}, \text{사망급부의 액면가치}})$ $\text{기대여명 기간 동안 지급되었을 연금급부의 현재} + \text{기대여명 종료시점에 지급되었을 사망급부의 현재}$

주: * 표시된 항목은 보험계약의 납입방법(일시납/비일시납), 배당 유무(유배당/무배당), 퇴직연금 여부(직장가입 퇴직연금/일반)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① 투자형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비일시납 유배당 퇴직연금 계약인 경우, 첫 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금에 포함된다. ② 전통형 상품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으로 계산한 적립금에 특정 비율 요소를 곱하여 최저해약환급금을 구한다. 이때 계약 발행일로부터 해약일 사이에 이미 지급한 소멸배당을 공제하는데, 계약 발행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적용된다. 즉, 소멸배당으로 인해 첫 3년 동안은 최저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언제 해약하든 소멸배당 공제로 인한 최저해약환급금 감액은 없다. ③ 연금형 상품에서는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급부를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급

부를 지급하는 즉시 종신연금의 경우, 기대여명을 고려한 기대 지급급부(연금급부 + 사망급부)의 현가와 사망급부의 액면가치 중 작은 금액이 최저해약환급금이 된다. 단, 거치연금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의 거치기간에 해약하면 연금형이 아닌 투자형 상품에 해당하는 최저해약환급금을 적용받는다. 한편,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정된 최저해약환급금이 없다. 단, 장기 보장성 상품은 전통형 상품의 최저해약환급금을 적용한다.

다. 손익분석⁵⁹⁾

호주의 생명보험회사는 LRS 430.0에 따라 규정된 손익분석 자료를 APRA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잉여금을 귀속 대상별(보험계약자 또는 주주) 및 이원별(표 IV-4 참조)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캐나다보다 훨씬 다양한 이원 구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손익분석 자료의 제출 목적은 자본기준 준수에 대한 평가 등 건전성 감독인데, 생명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계약자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손익분석을 고려한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⁶⁰⁾ 구체적으로 선임계리사는 공시된 손익의 주요 이원, 경험손익과 예상손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⁶¹⁾

〈표 IV-4〉 호주의 생명보험 이원 구분

구분	해설
① 보험부채를 초과한 자산의 투자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은 APRA 상품그룹 L13(보험계약자) 및 L14(주주)에 해당됨 • 투자수입은 투자비용과 상계하여 순투자수익으로 포함됨
② 이익마진(Profit margins emer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시점에 결정된 profit margin을 최선추정 가정에 기초한 profit carrier의 기대가치에 적용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③ 경험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실적과 예상치와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계약비, 유지비 - 사망률, 질병률 - 해약(surrender) 및 해지(discontinuances) 손익 - 당해연도 이익으로부터의 투자수익 - 가정된 미래순자산운용수익률의 변동에 의한 투자수익 - 세금 차이 - 기타

59) APRA(2012b)

60)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2021a)

61)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2021b)

〈표 IV-4〉 계속

구분	해설
④ 신계약의 손실	• 보유계약의 profit margin에 흡수되지 못한 신계약의 손실
⑤ 보유계약의 손실 인식 또는 취소	• 보유계약의 profit margin의 가치를 제거 또는 복구시키는 가정변경에 의한 손익
⑥ 자본화된 손실 또는 취소된 손실의 합계	• ④와 ⑤의 합계(total capitalisation of loss / reversal of capitalised loss)
⑦ 금융상품수익	• 생명투자계약(life investment contract)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흐름으로, 기초자산의 투자이익은 포함하고 생명투자계약부채 가치의 변동은 차감하여 산출함 • 본질적으로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변화와 불일치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화에 기인한 수익을 뜻함
⑧ 경영서비스수익	• 생명투자계약의 경영서비스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에 경영서비스요소 관련 자산(부채)의 가치를 합산(차감)한 값 • 본질적으로 수수료(fee)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
⑨ 가치평가 방법 및 가정의 변화	• 이연 수수료 수입 및 이연 신계약비를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one-off changes)를 포함함
⑩ 생명보험 세후 영업이익의 합계	• 위 모든 수익 항목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⑪ 연말 누적 손실	• 인식되고 취소되지 않은 손실의 합계로, 음의 값을 가짐

라. 계약자배당⁶²⁾

호주에서는 영업이익을 사업범주에 따라 〈표 IV-5〉의 네 가지 보유이익 계정에 할당(allocation)한 후, 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에게 보유이익을 배분(distribution)한다. 이때 영업이익은 미실현손익을 포함하기 때문에⁶³⁾ 미실현이익이 배당의 형태로 사외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할당한 금액을 개별 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함으로써 배분하는 것은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⁶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배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호주 계약자보유이익 계정에 할당한 금액은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⁶⁵⁾ 때문에 적립하다가 자율적인 시점에 호주 계약자에게만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62) Life Insurance Act(생명보험법); “Prudential Standard LPS 340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63)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2005. 3)

64) 오창수·김경희(2020)

65) 해외 계약자보유이익 계정에 할당한 금액은 APRA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있으며, 호주 주주보유이익 계정, 해외 및 무배당 주주보유이익 계정에 할당한 적립금은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됨

〈표 IV-5〉 호주의 사업범주별 보유이익

구분	호주	해외
유배당	호주 계약자보유이익	해외 계약자보유이익
	호주 주주보유이익	
무배당	해외 및 무배당 주주보유이익	

호주의 생명보험 회사는 계약자와 주주 간 영업이익의 배분을 보고 기간 말의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호주 유배당 계약은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호주 계약자보유이익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호주 주주보유이익에 할당(+)(+)하도록 되어있다. 호주에서는 유배당보험 계약자보유이익과 유배당보험 주주보유이익 등에 대하여 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⁶⁶⁾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손실이 발생한 호주 유배당 계약의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80% 이하를 호주 계약자보유이익에서 할당(-)하고 나머지를 호주 주주보유이익에서 할당(-)한다. 해외 유배당 계약은 회사가 정한 비율 그 이상의 영업이익 또는 그 이하의 영업손실을 해외 계약자보유이익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해외 및 무배당 주주보유이익에 할당한다. 무배당 계약의 영업손익은 전액 해외 및 무배당 주주보유이익에 할당한다.

호주의 계약자배당은 정기배당(reversionary bonus)과 중간배당(interim bonus), 소멸배당(terminal bonus)으로 구성된다. 정기배당은 매년 계약자에게 귀속(declare)된 뒤 부리되어 보험 만기 또는 실효, 해지로 급부가 제공될 때 함께 지급된다.⁶⁷⁾ 중간배당은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특정일자까지 계약이 유효했다면 지급되었을 정기배당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배당이다. 소멸배당은 보증되는 배당은 아니며 계약소멸 시에 정기배당을 초과하는 이익이 있을 경우 정기배당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한다.⁶⁸⁾

66) APRA(2010. 7. 12): 단, 일반회계 목적의 재무제표상에서는 부치가 허용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있음

67) <https://www.ato.gov.au/law/view/view.htm?docid=EV/1051280140319&PIT=99991231235958>

68) 호주 정부 API 홈페이지(<https://api.gov.au/definitions/definition/fs/de5042>)

3. 영국

가. 책임준비금

영국은 FRC에서 FRS 102, FRS 103 등으로 구성된 일반회계기준(UK GAAP)을 발표하고, 두 감독기관 FCA와 PRA에서 각각 FCA Handbook과 PRA Rulebook을 통해 감독회계를 규정하는데, 2016년 유럽 공동의 지급여력기준인 Solvency II가 시행된 이후로는 이 규정들이 보험부채나 책임준비금에 있어서는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기존에 일반회계인 FRS가 보험부채에 있어서는 FCA Handbook의 INSPRU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었는데, Solvency II를 적용받는 영국의 보험회사들이 모두 INSPRU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반회계기준 FRS의 보험부채 관련 내용 또한 원칙 기반으로 개정되었다.

〈표 IV-6〉 영국의 책임준비금 관련 기준

기관	책임준비금 관련 기준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Rulebook Technical Provisions; Technical Information for SolvencyII firms ¹⁾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INSPRU(Prudential Sourcebook for Insurers) 1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S 102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RS 103 Insurance Contracts

주: 1) 책임준비금 산출에 사용하는 무위험이자율 등의 구체적 값을 제시함

시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책임준비금은 최선추정치(Best Estimate)와 위험마진(Risk Margin)의 합으로 구성된다. 책임준비금의 최선추정치는 확률가중평균한 미래 현금흐름의 유입과 유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Solvency II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최선추정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⁶⁹⁾ 한편 영국에서는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신계약비를 이연하지 않는다.

Solvency II의 도입 전에는 2004년 이전까지 부채의 현금흐름에 중점을 둔 부채평가⁷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영국 생명보험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저축성 상품이

69) PwC(2020. 3)

70) '탄력적 준비금(Resilience Reserve)'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는 평가체계였음

주력 상품이 되고 자산 포트폴리오에서는 주식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2000~2002년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자산의 변동과 부채의 변동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⁷¹⁾ 이에 영국은 2004년 자산평가와 부채평가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영국의 동 제도⁷²⁾는 전 세계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자산 시가평가제도 원칙을 가장 가깝게 준수하는 회계제도로 평가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순보험료 방식의 공제액 산정 부분이 가지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험료 방식이 도입되었다.⁷³⁾ 영국 장기보험의 영업보험료식 보험부채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1) 보험료
- (2) 기대 보험금 및 유배당 상품의 경우 정기 배당금 및 소멸 배당금
- (3) 계약 유지 비용
- (4) 미래 갱신 비용

나. 해약환급금

영국은 배당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어 주요 제도가 배당보험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감독기관(FCA)이 작성한 기준서(COBS)에서 해약환급금 산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보험회사는 개별 계약에 대해서는 고유의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사한 상품들의 그룹 내에서는 총 해약환급금의 금액이 COBS 기준에 따라 자산할당 방식으로 산출된 해약환급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COBS 기준에 따른 자산할당 방식의 해약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COBS에서 정한 만기지급액의 설정 및 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해약시점에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할당된 자산가치를 구하는데, 자산할당 시 고려사항으로는 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증감액,⁷⁴⁾ 자산투자수의 등이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액의 목표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만기지급액에는 해약환급금이 포함되므로 해약환급금 목표범위의 상한은 만기지급액 목표범위의 상한보다 낮아야 한다. 자산할당 후에는 할당된 자산 가치에서 공제금액을

71) 대표적으로 Equitable Life사가 2002년 계약자배당금의 평가 및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에 가까이 이르면서 3만여 명의 고령자를 포함한 보험계약자들의 계약 가치를 평가절하 하고 영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함: 영국 국회(2018), "The Solvency II Directive and its impact on the UK Insurance Industry"

72) 'Twin Peaks Approach' 제도; 유배당 자본 항목(WPICC)을 설정하여 이익을 이연하도록 하는 평가체계였음

73) 이장희·김동겸(2007)

74) 장래 배당을 고려해 계산한 증감액을 가리킴

차감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유배당 계약의 남아있는 계약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전가되는 고정비용 등을 공제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해약 시 적용하는 표준기초율(사망률, 이자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험실적을 반영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손익분석

영국에서는 상장보험회사의 평가를 위하여 1990년대부터 전통적인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내재가치 분석보고서(Embedded Value Report)를 사용하여 이원에 관한 공시를 하고 있다. 즉, 당기손익의 분석이 아닌 내재가치(Embedded Value)의 변동을 분석한다.

1990년 Gedded working party에서 내재가치에 대한 Guidance를 최초로 발표한 이후, 2001년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Supplementary Reporting for Long-Term Insurance Business(Achieved Profit Method)”를 발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⁷⁵⁾ 하였다. 또한 2004년 5월 CFO Forum⁷⁶⁾은 “유럽 내재가치 기준서(European Embedded Value Principles; EEV Principles)”를 공표하고 할인율 산출 원칙 제시 및 산출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금융옵션과 보증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서 내재가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EEV 할인율 설정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과 내재가치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MCEV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6월 발표된 MCEV 방식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Solvency II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서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할인율(무위험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내재가치 수익성 분석은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당기손익을 분석하는 이원분석과 유사하며,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한다. 이원분석이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의 자본 및 잉여금의 변동(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형태로 나타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내재가치 수익성 분석은 자본 및 잉여금을 미래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변환한 형태인 내재가치의 변동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5) IAFA(2005)

76) 유럽의 주요 보험회사 CFO(Chief Financial Officer)들이 2002년도에 만든 조직으로서, 국제회계기준과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이슈의 토의를 목적으로 창설함

내재가치의 수익성 분석은 일정기간의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의 내재가치 차이에 대한 분석(Analysis of Return on EV)을 통하여 내재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초 내재가치의 수입은 '기초와 기말 내재가치의 차이'에 '보유계약에 할당된 자산으로부터의 자본 환입'을 더하고 '보유계약으로의 자본 전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내재가치 변동 요인들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① 실제 경험실적과 예상치와의 차이(차이 분석) ② 예상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방식 또는 접근방법의 변화(모델 변경) ③ 리스크 마진 또는 예상치에 대한 가정의 변화(가정변경) 들은 설명되어야 한다. 내재가치 차이의 분석은 경영자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영업손익'과 통제가 어려운 '경제적 손익'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표 IV-7〉 내재가치 분석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본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대상계약에 대한 자본의 전입과 환입
영업 손익	기대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자산(Net Asset)에서의 투자수익 시간 경과에 따른 할인기간 감소로 인한 기시 보유계약가치의 증가 시간 경과에 따른 '자본비용'과 '재무적 옵션과 보증 가치'의 감소 기시 보유계약가치에서 분석기간 중 실현된 예정이익의 조정 (순자산 증가요인이면서 보유계약가치 감소요인)
	보험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시점에서의 신계약 가치 기시 보유계약가치 중 보험 관련 예상치와 경험실적과의 차이(위험률차, 사업비차 등) 보험 관련 가정의 변경에 따른 가치의 변화
경제적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시 보유계약가치 중 경제적 변수와 관련된 예상치와 경험실적과의 차이 (투자수익의 변동 등) 경제적 변수와 관련된 가정의 변경에 따른 가치의 변화

자료: CFO Forum(2005)

라. 계약자배당⁷⁷⁾

영국의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FCA Handbook COBS 20 'With-profits'에서 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자산할당 방식(asset share methodology)으로 배당률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자산할당 방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

77) FCA Handbook COBS 20; IFoA(2010)

되며,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원칙과 세부사항을 기술하는 PPFM(Principles and Practices of Financial Management)을 발간하여 배당률의 결정방침 등을 설명해야 한다.

- (1) 상품그룹별 표본계약을 선정
- (2) 표본계약의 자산할당을 평가연도마다 재계산
- (3) 자산할당의 비율 형태로 목표범위(target range)를 설정⁷⁸⁾
- (4) 만기지급액⁷⁹⁾이 목표범위 안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정기배당(regular bonus)⁸⁰⁾을 지급
- (5) 만기지급액이 자산할당의 100%가 되도록 소멸배당(terminal bonus)을 지급

계약자와 주주 사이에서 계약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최소비율(required percentage)로는 회사에서 정한 비율 또는 관할 법원이 명한 비율을 사용하고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정립된 관행에 따른 비율을 사용하며 이 모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이 최소비율은 여러 가지 조정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계약자에게 이미 배분한 금액의 시장가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 후의 배분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배당의 지나친 변동을 막기 위하여 매년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전년도의 계약자배당비율에서 0.5%p를 감한 비율을 적용한 배당금액이 최저한도(after the event notification to policyholder minimum)로 정해져있다. 보험회사가 이 수준보다 낮은 배당비율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FCA와 해당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배당금의 계산 방법과 합당한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⁸¹⁾ 또한 전년도의 계약자배당비율에서 2%p를 감한 비율을 적용한 배당금액(pre-notification to policyholder minimum)보다도 낮은 비율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⁸²⁾

78) 예를 들어, '비평활화 자산할당의 85%에서 110%'와 같은 형태로 설정하되, 자산할당의 100%를 포함하는 범위로 설정해야 함

79)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그리고 배당금 등을 포함함

80) 영국에서는 200여 년 전부터 유배당 계약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사망률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족하여 계약의 기초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이라 하여 환원배당(reversionary bonus)이라고 부르기도 함

81) 배분 1개월 전까지 FCA에, 배분 후 합당한 기간 내에 해당 유배당 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82) 배분 2개월 전까지 FCA에, 배분 1개월 전까지 해당 유배당 계약자에게 최저한도를 알려야 함

4. 미국

가. 책임준비금

1)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미국의 일반회계기준인 GAAP에서는 미국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가 제정한 재무회계기준서(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AS)를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한다. GAAP은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비교 분석을 위한 수익평가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회사와 보험산업 전반의 경험을 반영한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출한다.

GAAP에서는 책임준비금을 상품별로 발행연도, 순보험료식 방식을 따라 평가하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과 비용에서 미래에 수취할 순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순보험료는 미래의 보험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영업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에는 해약환급금도 포함되고 비용에는 신계약비와 유지비가 모두 포함된다.⁸³⁾ 이연신계약비는 자산으로 처리하여 보험료의 수취에 따른 비율로 전기에 걸쳐 상각하고 비용으로 인식하며, 책임준비금은 음의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2) SAP(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은 감독회계기준으로 일반회계기준인 GAAP과 차이를 보이며,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에서 발행한 SVL(Standard Valuation Law)를 따른다. SAP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나타냄에 목적이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규정중심의 최저준비금을 근거로 준비금을 평가한다. 감독당국은 생명보험회사가 보유 중인 사망, 연금과 순수생존보험의 책임준비금 산출 시 필요한 사망률, 이자율과 평가방법을 직접 정한다. 책임준비금 평가 시 발행연도 방식을 따르며, 보험상품 유형별로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CRVM과 연금 및 순수생존보험상품에 대한 CARVM으로 나뉜다.

83)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수취할 보험료 등의 산출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자율, 해약율, 사망/질병률, 사업비용 등을 회사 혹은 보험산업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최선추정하고, 여기에 PAD를 포함하여 이루어짐

CRVM에서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신계약비를 초년도 순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연 없이 비용처리하며, 2차 년도 이후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을 따라 준비금을 평가한다. 즉, 초년도에 신계약비 비용 처리 금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음의 준비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CARVM에서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CRVM과 다르게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기초로 책임준비금을 산출한다.

한편 NAIC는 감독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을 원칙론적 준비금 방식(PBR)으로 개편하여 2020년 1월 이후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새로운 평가방식을 따라 준비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3) PBR(Principles-Based Reserves)

미국 NAIC는 2008년 재무건전성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규정중심 준비금 산출에서 원칙론적 준비금(Principles-Based Reserves; PBR)으로의 제도 변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SVL에 규정된 VM(Valuation Manual)을 2012년 최종 확정하여 보험회사는 2017년 1월 이후 3년간 신계약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PBR방식으로 준비금을 평가하였고, 2020년 1월 이후의 신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PBR을 통해 준비금을 산출하고 있다. PBR에서는 각 보험계약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준비금을 산출할 수 있고, 보험회사 내부의 경험통계를 활용한 기초율 가정을 적용하여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회사별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상황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반영한 준비금을 산출할 수 있다. 한편 VM은 보험상품별로 준비금 산출 방법을 규정하는데, 생명보험상품(Life Insurance Products)의 준비금 산출방법은 VM-20에서 다루고⁸⁴⁾ 있다.

나. 해약환급금

미국은 NAIC에 의해 채택된 표준해약환급금법(Standard Non-Forfeiture Law; SNFL)에

84) 생명보험상품 외 연금보험상품(Annuity Products), 저축성계약(Deposit-Type Contracts), 건강보험상품(Health Insurance Products), 신용생명 및 장애보험상품(Credit Life and Disability Products)에 대한 준비금 산출방법은 VM-21, VM-A, VM-C, VM-25, VM-26에서 규정하고 있음

의해 최저해약환급금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NAIC에서 제안한 SNFL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등 각 주의 특성에 맞추어 조금씩 변경하여 적용하며, 보험종류를 생명보험 및 개인저치연금보험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적용한다. 해약환급금이 최저해약환급금 이상이면 그 이상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초율 및 사업비는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상품별로 보면 생명보험⁸⁵⁾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보증된 장래 급부(보험금 등) 현가에서 장래 조정보험료(Adjusted Premium) 현가를 차감하여 산출되고 이는 순보험료식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것과 동일하며, 이때 조정보험료는 계약상 보장되는 급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평균순보험료와 초년도 신계약비를 합한 금액이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닌 규정(SNFL)에서 정한 기초율(사망률, 이자율)과 사업비를 적용하고 전기 Zillmer식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새로운 계산기초율 적용 사망률 표를 도입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1월이 될 예정이다.⁸⁶⁾

다. 손익분석

미국에서는 손익분석 자료가 감독당국 제출을 위해 작성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경영실적을 보고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감독규정상 보고양식이나 산출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각 이원별(source of earnings) 및 보험종목별(line of business)에 대한 손익을 정의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손익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목표수익 달성을 위한 예정기초율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⁸⁷⁾ 이원별로는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해약손익으로 구분되며, 보험분야별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회계기준(GAAP) 혹은 감독목적의 회계기준(SAP) 중에 선택하여 손익분석을 할 수 있다.⁸⁸⁾ 각 회계기준에서는 예정기초율의 보수성과 신계약비 처리의 차이가 발생하며,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당기손익 및 이원별 손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85) NAIC(2014)

86) NAIC(2021)

87) 보험회사는 신상품 개발 시 목표하는 이원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예정기초율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88) 주로 주식회사에서 GAAP을 준용한 손익분석을 하며, 주로 상호회사에서 SAP을 준용한 손익분석을 함

GAAP에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적용한 예정기초율과 위험에 대한 할증(PAD)을 사용하여 준비금을 평가하고, 매 기간마다 PAD의 변동(환입)이 이원별 손익으로 환원된다. 또한 GAAP에서 계상된 이연신계약비는 향후 비용으로 상각하여 사업비차손익에 포함되며,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인정하므로 예정기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약보험료가 해약손익 계산 시에 사용된다.

SAP에서는 CRVM을 따라 보수적인 예정기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비금을 사용하여 이원별 손익을 산출한다.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약보험료가 존재하지 않고, 신계약비의 이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연신계약비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SAP에서의 손익분석은 보수적인 예정기초율을 사용하고, 신계약비를 당해연도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정확한 이원별 손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표 IV-8〉 미국 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 이원분석

항목	GAAP	SAP
위험률차손익	예정 위험보험료 + 사망 당시 준비금 - 사망보험금 지급액	
이자율차손익	투자수익 - 예정 투자수익	
사업비차손익	영업보험료 - 예정 순보험료 - 신계약비 상각액 - 실제사업비	영업보험료 - 예정 순보험료 - 실제사업비
해약손익	예정 해약보험료 + 해약 당시 준비금 - 해약환급금 지급액	해약 당시 준비금 - 해약환급금 지급액

라. 계약자배당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량에 따라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며, 주(state)에 따라 법에서 유배당보험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기도 한다.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잉여는 계약자에게 직접 할당되거나 향후 계약자배당을 위해 적립해두기도 하며 계약자배당의 배분시점 혹은 배당 방법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유배당보험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SAP에서 계산된다.

미국 뉴욕주 보험법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잉여금에 대한 계약자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 잉여금(Divisible Surplus)은 각 생명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 수익성,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의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의되며, 주로 보험종목

(line of business)별로 할당된다. 이때 주주는 배당상품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10%와 배당 상품 계약액 1,000달러당 50센트의 금액 중 큰 값을 최고 한도로 가져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의 유사하게 배당 할당⁸⁹⁾을 통해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며, 배당 할당은 기여도 원칙(Contribution Principle)에 근거하여 각 보험계약이 발생한 잉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자배당의 지급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① 납입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에 유보 후 계약 소멸 시 혹은 계약자 청구 시 지급하는 방법, ④ 보험금을 증액하여 상품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5. 일본

가. 책임준비금

일본의 보험업법 제116조 제1항은 책임준비금⁹⁰⁾을 보험계약에 의거한 장래의 채무이행에 대한 준비를 위한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보험회계에 대한 기준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이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회사법 및 금융 상품 거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 보험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으로서의 측면보다는 감독회계(SAP)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일본에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보험감독회계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순보험료식으로 평가한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2019년 5월에 지급여력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편 범위 및 단계별 도입 일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5월에 발간된 일본 금융청의 경제가치기반의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유식자회의 보고서(안)에 따르면 지급여력제도의 표준모형 검토, 내부모형 심사기준, 타당성 검증, 경제가치 기반 정보, 공시항목 등은 2024년에 최종기준을 확정하고 실무해석지침 작

89) ASB(2006)

90) 일본에서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는 1898년 8월에 공포된 농상무성령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이전에는 각 회사가 이월적립금(명치생명), 보험준비금입금(일본생명)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음(생명보험Ⅲ 2003)

성 후에 2025년 4월부터 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나. 해약환급금

일본에서 해약환급금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해마다 보험금 지불 및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제경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개별 계약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정의된다(上田泰史 2009). 일본은 보험사업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 및 공정의 확보, 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지침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59년까지 보험료적립금은 전기 Zillmer식을 사용하였으며, 해지 시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연도의 해지공제 비율만큼 차감한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1960년부터 생명보험사업의 자유화로 인한 경쟁이 가속화되자 해약환급금의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보험료적립금의 방식이 전기 Zillmer식에서 순보험료식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전통적인 계산방법 외에 다양한 계산방법을 사용하는 추세에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금리 연동형의 보험상품은 보험료적립금에 시장금리를 조정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반환한다. 또한 저해약환급금형⁹¹⁾으로 불리는 상품은 해약환급금의 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한편, 공제 부분을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한 재원으로 하여 산정된다. <그림 IV-2>는 일본 생명보험에서 보험가입 초기 10년 동안 해약공제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해약환급금의 산출공식을 보여준다.

91) 일본 생명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표준형, 저해약 환급금형, 무해약 환급금형의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표준형은 해약환급금의 환급률이 가장 높고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해지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저해약 환급금형은 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환급률이 낮게 설정(일반보험 해약환급금의 70%)되지만 납입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저렴하고 경과연수가 증가할수록 해약환급금이 늘어나 장기계약을 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유리함. 무해약 환급금형은 해약환급금이 설정되지 않은 유형으로 생명보험의 저축 기능을 축소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짐. 일본의 생명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은 저축성이 높은 종신보험, 양로보험, 학자금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설정되지 않은 생명보험으로는 정기보험, 소득보장보험, 의료보험 등이 이에 해당함

〈그림 IV-2〉 일본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text{해약환급금} = \underbrace{\left[\begin{array}{c} \text{보험료 계산기초에 의한} \\ \text{수평순보험료식} \\ \text{보험료적립금} \end{array} \right]}_{\text{계약자 가액}} - \underbrace{\alpha * \frac{\text{Max}(0, 10 - \text{경과연수})}{10}}_{\text{해약공제}}$$

자료: 日本アクチュアリー会(2012)

다. 손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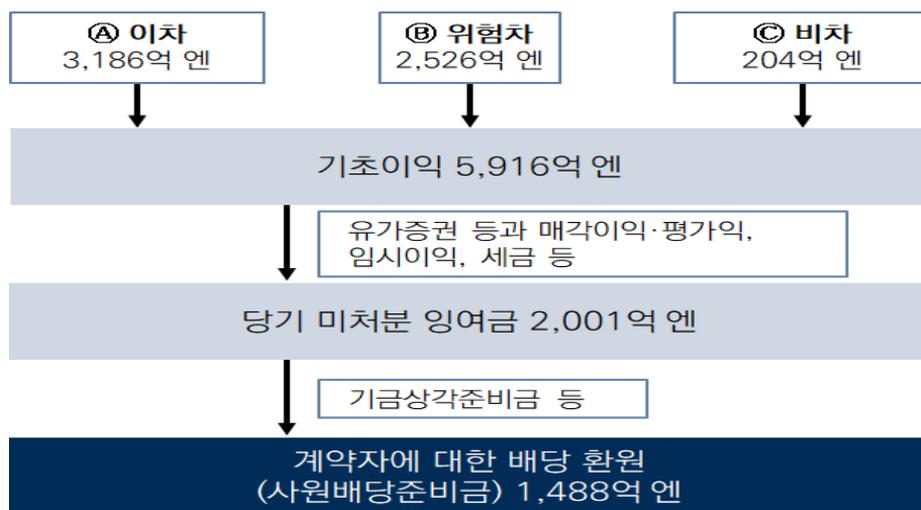
보험회사의 손익분석은 보험료 계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익의 원천마다 수익의 상황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원분석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일본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원분석은 주로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는 3이원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손익분석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자산운용 환경의 악화로 인해 이자율차익의 감소에 대응하며 배당 축소와 신규계약의 예정이율 인하를 통한 보험료 인상을 시행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로 이자율차 역마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일부 회사들은 파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자, 2000년부터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수지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초이익⁹²⁾이라고 불리는 역마진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는 보험회사의 수익을 3이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총액만을 결산보고서에 공개하였다. 이후 생명보험의 신뢰회복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도부터는 일부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역마진과 함께 기간 손익을 나타내는 기초이익에 대한 위험률차익, 사업비차익, 이자율차익의 구체적인 내역인 3이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결산보고서에 기초이익을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92) 기초이익은 예정 사망률에 따른 보험금 및 급부금 등 지급 예정액과 실제 보험금 및 급부금 등 지급 금액과의 차액인 위험차익, 예정사업비 비율에 따른 사업비 지출 예정액과 실제 사업비 지출의 차액인 비차익, 예정이율에 근거한 예정 운용수익과 실제 운용수익의 차액인 이차익(마이너스의 경우 역마진) 등 3이원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됨

다이이치, 메이지야스다, 스미토모, 타이요, 부국, 대동, 아사히, 간포 생명 등과 같은 대형사들은 수치 3이원방식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그림 IV-3>은 2019년 일본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회사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3이원분석에 대한 공시의 예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9년 동 회사의 이차익, 위험차익, 비차익은 각각 3,196억 엔, 2,526억 엔, 204억 엔이며 이들의 합인 기초이익은 5,916억 엔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이익에서 유가증권 평가 및 매각손익, 임시손익, 세금을 제외한 당기미처분잉여금은 2,001억 엔이며, 이 금액에서 기금상각준비금을 제외한 1,488억 엔이 계약자배당을 위해 환원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산이익의 현황을 공시한 표는 3이원에 대한 3년 치의 수치를 공시하고 3이원의 각 요소별로 전년도 수치와 금년도의 수치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변동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IV-3> 2019년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회사의 3이원분석 공시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기초이익	5,467	5,896	5,916	이자 및 배당금수익 증가 등으로 453억 엔이 증가함	
㉠ 이차	2,225	2,732	3,186		단체보험요율 개정(낮은 보험료) 등에 의해 228억 엔이 감소함
㉡ 위험차	2,889	2,754	2,526		
㉢ 비차	352	408	204	사업비 증가·연금자산에 대한 계리 차이 상각액 증가 등으로 204억 엔이 감소함	

자료: 明治安田生命(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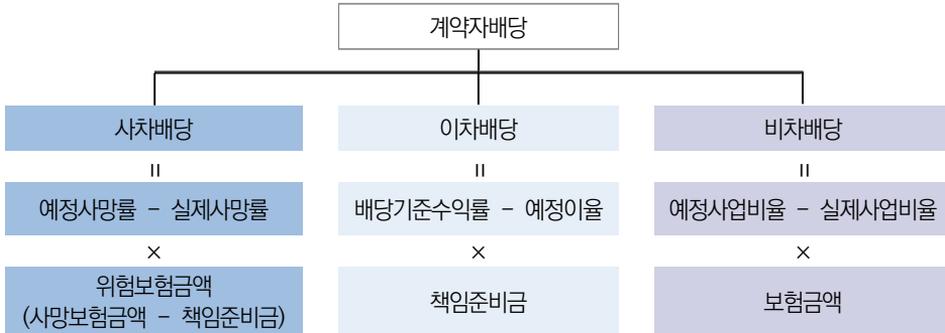
라. 계약자배당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미래의 경영활동을 위해 회사 내부에 유보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배분을 상장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배당으로, 상호 보험회사에서는 사원배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배당에 사용되는 금액은 상장 회사의 경우 손익계산서에서 계약자배당 준비금전입액으로 표시되지만 상호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에 대한 배당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사원배당 준비금으로 표시되지 않고 총 대위위원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 사원배당준비금으로 편입된다. 보험 관련 법령에서 계약자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의 할당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은 계약자배당이 공정하고 형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대장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자산배분 방식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및 자산운용 등 기타 수익으로부터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급부금 지출과 사업비 지출 등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보험종목, 연령 등을 모델로 설정하여 각 사업연도별 실제의 이율과 사망률, 사업비 비율 등을 기초로 수지계산을 한 후에 수지의 잔액과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배당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로 이원별 분배방식은 잉여금 분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이익의 원천별로 파악하여 예정보험료와 실제보험료의 차이를 각 이원별로 배당하는 방법이다. 보험회사들은 매년 결산 시 이원별 손익분석을 주 계약 및 특약에 따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된 잉여금을 이차배당, 사차배당, 비차배당, 특별배당으로 분배하고 있다.⁹³⁾ 세 번째 방식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분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험 기간 등에 의해 파악하여 각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보험료, 기타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응하여 금액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며, 넷째 방식은 위의 3가지 방식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자배당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93) 이차배당은 (실제 수익률 - 예정 이율) × 책임준비금의 총액으로 결정되고, 사차배당은 (예정 사망률 - 실제 사망률) × 위험 보험금으로 계산되며, 비차배당은 (예정사업비율 - 실제 사업비율) × 보험금으로 결정됨. 특별배당은 자본잉여금 및 잉여금의 미할당 부분을 재원으로 하여 계약자에게 지급되며 장기유지배당과 소멸시배당으로 구분됨. 장기유지배당은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이자율 차익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차배당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것이며, 소멸시배당은 계약의 소멸 시 정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된 후 소멸될 때 내부적으로 유보된 금액을 환급하는 배당을 의미함

〈그림 IV-4〉 일본 사망보험의 3이원방식 계약자배당 계산방식



자료: AXA(2015)

일본의 유배당보험은 3이원배당방식과 이차배당방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3이원배당방식은 매년 결산 시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 이용하는 3개의 예정율과 실제의 비율과의 차이에 의해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 3이원배당방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3년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차배당방식은 예정이자율과 실제 운용성과의 차이로 인한 손익을 일정 기간마다 합산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5년 단위로 손익을 합산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으로 배분하는 구조의 이차배당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3년 또는 매년 단위로 지급되는 이차배당형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별 보험계약의 이익 공헌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환산하고 이를 매년 축적하여 5년마다 그 시점에서의 누적 포인트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도 존재한다.

〈그림 IV-5〉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배당금 구조



6. 소결

가. 캐나다

캐나다의 책임준비금 평가제도는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⁹⁴⁾ CALM(Canadian Asset Liability Method)이라는 캐나다만의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이 있어 책임준비금은 매 평가년도에 재산출된 최선추정치에 역편차마진준비금(PAD)을 더하여 산출한다. 또한, CALM은 영업보험료식⁹⁵⁾ 책임준비금 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유입이 현금유출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음수준비금이 계산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력비를 계산 시 기본자본의 33% 내에서만 음수준비금을 인정함으로써 음수준비금을 간접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상품별 책임준비금의 합계가 양수를 나타내어도 개별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음수준비금이 계산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특별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급부 방식으로 제시되며 손익분석은 보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3대 이원⁹⁶⁾에 신계약의 영향과 잉여금의 투자수익을 더하여 5대 이원으로 분석한다. 배당상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므로 타 계정으로 자금이체는 제한되고 정기배당 외에 소멸배당도 지급된다.

나. 호주

호주의 책임준비금은 영업보험료 방식의 시가평가에 기반하여 최선추정부채에 미래 주주이익의 최선추정치를 더하여 산출한다. IFRS17의 보험계약마진(CSM)과 유사하게 Profit margin을 산출하며 Profit Carrier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배분한다. 해약환급금은 생명보험법의 계리기준에 근거하며 최저해약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된다. 손익분석은 캐나다보다 더 다양한 이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계약자배당은 자산할당방식을 적용한다.

94) 캐나다의 감독기구는 필요 시 감독목적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일반목적 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없음

95)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제도와는 다르게 부가보험료, 사업비 등도 감안한 영업보험료를 고려하여 장래 현금흐름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함. 즉, 미래의 보험금, 사업비, 보험료, 투자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하는 방식임

96) 예상손익(역편차총당금 환입), 경험손익(최선추정치와 경험실적의 차이), 준비금 평가 가정변경에 의한 효과임

다. 영국

영국은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서 일반회계기준 FRS(Financial Reporting Standard)를 발표하고, 두 감독기관 FCA와 PRA에서 각각 FCA Handbook과 PRA Rulebook을 통해 감독회계를 규정하는데, 2016년 유럽 공동의 지급여력기준인 Solvency II가 시행된 이후로는 이 규정들이 보험부채나 책임준비금에 있어서는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책임준비금은 Solvency II와 동일하게 최선추정치와 위험마진의 합으로 구성되며 시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손익분석은 당기손익이 아닌 내재가치의 변동을 분석하고 계약자배당은 자산할당방식을 적용한다. 해약환급금은 자산할당 방식으로 산출된 해약환급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원칙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라. 미국

미국은 일반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과 감독회계기준(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감독회계기준에서는 기존 규정 중심 준비금 평가방식에서 원칙 중심 준비금 평가방식인 PBR(Principle-Based Reserves)으로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 보험회사는 2020년 1월 이후 신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PBR방식에 따라 준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현행 GAAP은 순보험료식 평가방식이나 2023년에 시행될 새로운 기준은 IFRS17과 유사하게 시가평가를 하는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변경된다.

해약환급금은 부채평가방식과 상관없이 표준해약환급금법에 의해 최저해약환급금을 규제하고 있다. 이원분석은 자료가 감독당국에 제출을 위해 작성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경영실적을 보고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감독규정상 보고양식이나 산출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험회사는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회계기준(GAAP) 혹은 감독목적의 회계기준(SAP) 중에 선택하여 이원분석을 할 수 있고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해약손익으로 구분한다. 계약자배당은 기여도 원칙⁹⁷⁾(Contribution Principle)에 따라 배당을 할당하며 기여도 원칙은 예상기초율과 실제기초율의 차이에 근

97) 기여도 원칙이란 계약자배당 시에 배당가능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이 공헌한 기여도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보험회사가 기여도 원칙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원인과 차이점을 문서로 만들어야 함

거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마. 일본

일본의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는 일원화된 상태이며 책임준비금은 순보험료방식으로 산출한다. 다만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될 지급여력제도는 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하게 되어 일본도 재무건전성제도는 경제적 가치에 기반하게 된다.

해약환급금제도도 국내와 유사하나 상각기간을 7년이 아닌 10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을 목적으로 3이원방식으로 산출한다. 계약자배당은 자산할당방식이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며 상호회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이익의 80%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다. 이차배당의 경우 5년마다 누적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일반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V

제도 개선방안

1. 해약환급금

가. 해외사례 비교

해외의 해약환급금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부채평가방식과 무관하게 제시된다. 캐나다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정이 없이 급부방식으로 제시되며 호주와 미국은 상품별 최저해약환급금 산출방법을 제시하여 계산기초율(이자율, 사망률표)이 제공되고 비용에 대한 상각기간은 보험기간 전 기간이 된다. 영국은 배당보험의 경우 할당된 자산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감독규정에서는 원칙만 제시된다. 한편 일본은 국내와 유사하게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상각기간이 10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더 긴 모습을 보인다.

〈표 V-1〉 국내 및 해외제도 비교(해약환급금)

구분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관련규정	없음	감독규정	감독규정	감독규정	감독규정	감독규정
산출기준	급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보험료식 • 전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 • 연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개시 전은 투자형과 동일 - 연금개시 후는 기대여명 고려 	자산할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 • 연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보험료식 	순보험료식	순보험료식
상각기간	-	전 기간	-	전 기간	10년	7년

나. 개선방안

해약환급금은 보험약관상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항으로 보유계약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신계약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

(1안) 현행 방식 유지

신계약과 보유계약 간 해약환급금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시가 기준 보험부채 평가와 독립된 방식을 제안한다. 하지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산출방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부채시가평가와 상관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산출방식에도 변화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

(2안) 캐나다식 급부제도

캐나다 사례와 유사하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는 방안으로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보험회사가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별 해약환급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K-ICS에서는 캐나다 지급여력제도(LICAT)와 유사하게 해약환급금 부족분을 보완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므로 간접적인 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

급부제도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해약환급액이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3안) 호주, 미국식 최저해약환급금제도

호주, 미국방식은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된 가정과 무관하게 최저해약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보험규정에서 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부채 평가 및 보험료 산출방식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제도 적용이 용이하나 보수적인 해약환급금 적용으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최저 해약환급금에 반영되는 계산기초율, 미상각 신계약비 공제방식 등을 규정해야 하여 제도 개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 제안사항

해약환급금은 피보험단체의 공동준비자산에서 피보험집단을 탈퇴하는 계약이 발생할 때 탈퇴자의 몫으로 환급받는 금액으로 유지 계약에 대한 장래보험금 지급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와는 개념이 달라 해외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산에 있어서도 별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방식이 도입되고 K-ICS 가용자본 산출 시 해지위험을 초과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을 가용자본으로 분류하여 이미 최저해약환급금제도가 간접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다. 또한, IFRS17은 신계약비를 전 기간 동안 이연 가능하므로 해약환급금제도를 통한 사업비 관리도 어렵다.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방식으로 인한 무저해지 상품이 이미 도입되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기존보다 작은 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변화에 대한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3안)의 경우 과거 표준책임준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감독당국이 표준 계산 기초율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책임준비금은 이미 2015년에 폐지한 취지를 고려할 때, (2안)인 급부방식의 도입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 시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저해약환급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한 사례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보호 수단을 마련한 후 급부방식의 해약환급금 도입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최근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여 합리적인 해약환급금 설정 유도 및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예고⁹⁸⁾한 바 있다.

2. 손익분석

가. 해외사례 비교

손익분석 해외사례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익 변동의

9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11. 8),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의 원인 구분은 3이원에서 7이원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손익분석을 계약자배당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한편 캐나다는 IFRS17 도입에 따라 이원공시에 대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는 IFRS17의 보고양식에 이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이원공시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 국내 및 해외제도 비교(손익분석)

구분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분석대상	당기손익	당기손익	내재가치	당기손익	당기손익	당기손익
목적	이익 원인 분석	이익 원인 분석	가치변동 분석	이익 원인 분석	계약자배당	계약자배당
이원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유계약 예상손익 ② 경험손익 ③ 신계약 영향 ④ 경영정책 및 가정변경 손익 ⑤ 잉여금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부채 초과 자산의 투자수익 ② 이익마진 ③ 경험손익 ④ 손실의 이연 및 이연 손실의 취소 ⑤ 금융상품수익 ⑥ 경영서비스 수익 ⑦ 가치평가방법 및 가정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대수익 ② 보험손익 ③ 경제적손익 ④ 자본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률차 손익 ② 이자율차 손익 ③ 사업비차 손익 ④ 해약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률차 손익 ② 이자율차 손익 ③ 사업비차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률차 손익 ② 이자율차 손익 ③ 사업비차 손익

나. 개선방안

(1안) 현행 방식 유지

계약자배당제도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원가방식의 손익분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현행방식의 유지가 필요하다.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구분, 주주 및 계약자 지분 구분 등을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자배당제도와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나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 시스템 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안) IFRS17 손익계산서 활용

IFRS17의 손익계산서는 예정 대비 실제의 차이가 명시적으로 반영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원별 손익분석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향후 IFRS17의 손익계산서로 대체 가능하여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 이처럼 손익분석을 계약자배당목적이 아닌 보험회사 이익의 원천을 분석하는 목적이라면 IFRS17 손익계산서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손익분석을 위한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IFRS17 손익계산서에서 제시하는 정보로만 손익분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안) 이익 원인 분석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손익분석 제도를 계약자배당의 목적이 아닌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당기손익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안)에서처럼 손익계산서 자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호주 방식과 같은 다양한 손익분석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변화에 따른 이익 변화를 상품별, 판매채널별, 납입방법별 등으로 구체화한다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IFRS17 손익계산서에서 제시하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히 이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이익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 제안사항

현행 손익분석 제도는 계약자배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계약자배당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손익분석은 보험회사 이익의 원천을 분석하는 방안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손익분석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시가부채평가에 따른 당기손익의 원인을 설명하는 (2안) 또는 (3안)이 적절할 것이다. 감독당국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사 상황에 따라 IFRS17 손익계산서로 손익분석을 대체하는 (2안)을 적용하거나 좀 더 세밀하게 손익분석을 하는 (3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계약자배당을 위한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제도에서 흡수하여 배당손익 구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3. 계약자배당

가. 해외사례 비교

해외 국가들은 자산할당, 이원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당 금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정기배당 외 중간배당, 소멸배당 등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유배당 상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므로 무배당상품과의 손익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자 몫의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기여도 원칙하에 평활화 방안 등을 통해 공정성, 형평성, 예측 가능성에 기반하여 배당금을 산출한다.

〈표 V-3〉 국내 및 해외제도 비교(계약자배당)

구분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배당방법	이원분석 경험보험료 자산할당	자산할당	자산할당	이원분석 경험보험료 자산할당	이원분석 자산할당 등	이원분석
배당종류	정기배당 소멸배당	정기배당 중간배당 소멸배당	정기배당 소멸배당	정기배당 소멸배당	정기배당 소멸배당	정기배당
비고	기여도 원칙 평활화 적용	-	-	기여도 원칙	-	-

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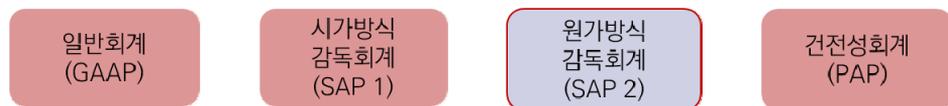
계약자배당 금액은 계약자배당 적립전 잉여금에서 유배당과 무배당의 손익을 구분한 후 투자수익은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험률차 배당금(위험보험료×위험률차배당률)과 사업비차 배당금(예정유지비×사업비차배당률)은 위험보험료와 예정유지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과 상관이 없으나 이자율차 배당금(해약식적립금×(배당기준이율 - 평균예정이율))은 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약자배당에 대한 개선방안은 투자수익 배분방법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1안) 현행 방식 유지

원가 책임준비금 방식과 손익분석 방식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므로 계약자배당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계약자배당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계약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IFRS17 손익과 일치하지 않고 <그림 V-1>과 같이 원가방식 감독회계를 위한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현행 시스템 및 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해약환급금 지급 및 내부관리를 위한 현행 시스템 유지 및 산출로 인해 원가방식은 일정부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1> 계약자배당(1안)



(2안) 시가 방식 적용

현행 계약자배당 제도에서 시가 방식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계약자배당 시 시가기준 재무제표의 당기손익을 기준으로 유무배당 손익을 구분하고 투자수익 배분도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추가적인 재무제표 작

성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수익을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으로 배분하므로 배당 금액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계약자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배분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금리 유배당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배분할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변경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자배당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증가한 부채는 주주의 자본이 반영된 것이므로 계약자가 기여한 것이 아닌 주주가 기여한 부분이 된다.

고금리 유배당 계약에서 계약자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통해 살펴보면, 투자수익인 자산운용수익률이 3%일 때 이를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현재보다 고금리 유배당 계약상품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배분된 상품별로 무위험수익률에 기반하여 투자비용이 산출되는데, 만약 투자비용이 2%라면 해당 상품에 대해 1%p에 해당하는 투자기익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고금리 계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계약자배당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 방식 적용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초 적용 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V-2〉 계약자배당(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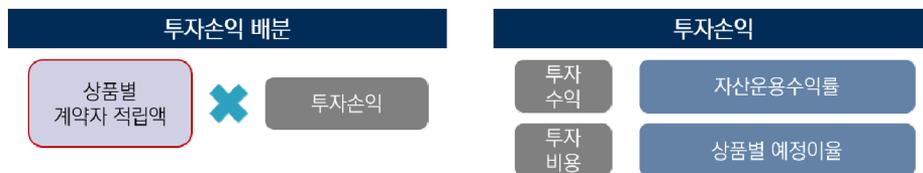


(3안) 투자손익 배분 조정 시가방식

투자손익을 계약자 적립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투자손익에서 투자비용 계산 시 상품별 예정이율을 투자비용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부채이자비용을 무위험수익률이 아닌 예정이율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투자손익 계산 시 자산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투자수익을 계산하지만 투자비용은 상품별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상품별 투자손익을 산출해야 한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투자손익이 배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때 IFRS17 손익과 차이가 발생하고 세부 배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V-3〉 계약자배당(3안)



다. 제안사항

계약자배당에서의 이슈사항은 투자손익 배분과 투자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것이다.

(1안)과 (3안)은 외부에 공시되는 손익과 계약자배당 대상손익이 일치하지 않아 손익배분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2안)은 손익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투자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므로 개선방안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해의 사례를 보면 부채시가평가를 하더라도 기여도 원칙에 따라 배분하고 평활화된 기초율 적용을 통해 계약자배당금액의 급격한 변동 방지 및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현행 국내 제도에서도 해외 국가와 같이 유배당 상품에 대해 별도 계정이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의 투자수익률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부채평가방식과 상관없이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지만, 유배당 및 무배당 상품에 대한 자산이 일반계정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어 투자손익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배당제도 개선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유·무배당 상품 간 계정구분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면 5년 내 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하고 손실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3이원방식만 배당이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인지한다면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원가방식제도 유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새로운 유배당 상품 출시를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FRS17 도입 대응뿐만 아니라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외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배당보험의 자산 구분, 계약자배당결정방식의 다양화, 계약자배당금 지급시기의 자율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신규로 개발 및 판매되는 유배당보험은 자산을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3이원 방식뿐만 아니라 자산할당, 경험보험료 방식 등 배당금 결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약자배당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소결

지급여력제도인 K-ICS에 시가방식 부채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가용자본을 포함한 감독회계와 계리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신 제도 도입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독회계 이슈사항을 살펴보고, 일반회계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계리제도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의 계리제도는 책임준비금 평가 외에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제도가 존재하고 책임준비금에 기반하여 계리제도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책임준비금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도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은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 배당과 법인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IFRS4에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실질 순자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IFRS17 도입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기반하여 산출되는데 IFRS17이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의 법인세도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사항을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1. 주주배당가능이익

현행 상법에서는 자본건전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그리고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⁹⁹⁾

〈그림 VI-1〉 배당가능이익

순자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배당가능이익

이때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는 이유는 평가이익을 실현하기 전 배당의 형태로 현금이 유출되어 채권자 이익 침해 및 회사의 장래 자원 부족을 막기 위함이며, 보수적인 배당가능이익의 산출을 위해 미실현이익은 미실현손실과 상계를 불허한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수출제조회사의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는 연계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여 현금흐름이 상쇄되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할 경우 환율과 이자율 등 외부 변수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계성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에 대한 상계를 허용한다.¹⁰⁰⁾

보험회사의 경우 IFRS4에서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하여 자산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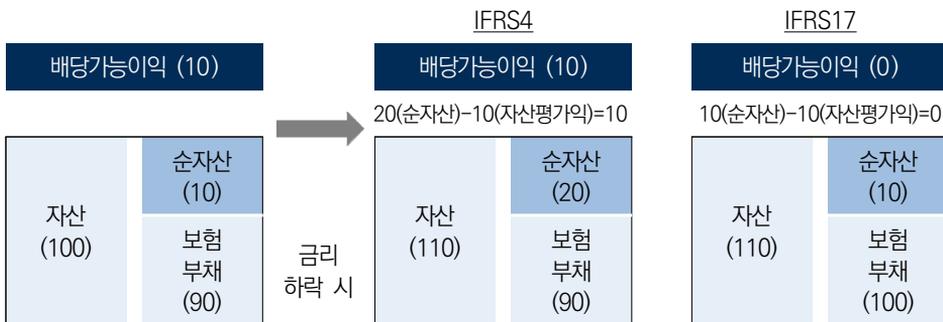
99)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100) 상법 시행령 제19조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었지만,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됨에 따라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에 매칭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자산과 부채가 금리 변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게 되지만 평가손익의 상계가 불가능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금리의 변동에 의해 보험회사 순자산과 기타포괄손익이 변동하며 배당가능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하락 시 IFRS4에서는 자산 변동에 의해 순자산과 미실현이익이 동시에 증가하여 배당가능이익에는 변동이 없지만, IFRS17에서 부채의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여 순자산은 소폭 감소¹⁰¹⁾하지만 부채의 평가손실은 상계되지 않고 자산의 평가이익만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어 배당가능이익이 IFRS4 기준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그림 VI-2〉 회계기준별 배당가능이익 변화(금리 하락 시)



또한 금리 상승 시 IFRS4에서는 자산 변동에 의해 순자산이 감소하고 미실현손실은 상계되지 않아 순자산의 감소분만큼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하게 되며, IFRS17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고 부채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순자산이 소폭 증가하지만 부채의 미실현이익이 차감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지 못한다. 즉, 금리 변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대체적으로 배당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 미실현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01)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부채듀레이션은 자산듀레이션에 비해 길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의한 부채 증가폭이 더 크게 발생함

즉, 미실현이익의 측정 단위(보험계약 및 포트폴리오 집합)를 정의하고 자산부채매칭을 위한 보유 금융자산과 보험부채와의 상계 방안을 고민하여 보험부채시가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의 산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FRS17이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할인율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에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2. 법인세

현재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IFRS17가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법인세도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인정¹⁰²⁾되어 부채가 늘어날수록 법인세는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IFRS17이 도입되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들은 책임준비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보험부채를 판매시점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원가로 평가하고 현금주의에 근거하여 보험료 수취 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험금 지급 시 비용으로 계상해 왔고 세무당국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책정하였다. 한편 IFRS17에서 수익과 비용은 보험료 및 보험금 등의 현금흐름과는 무관하게 인식되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여 현행 법인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만약 IFRS17 도입 후에도 지금처럼 보험회사의 법인세를 원가평가로 산정한다면 보험회사들은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증가하며 부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는 종전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FRS17 및 보험회사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IFRS17에 맞게 변경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현행 회

102)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등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 계상된 보험부채는 대부분 각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

계기준은 현금주의에 의해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이 이루어진 후에 보험료 수익을 전 보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중 유지비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신계약비의 지출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7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에서는 사업비에 대하여 보험계약 내의 경계에 있는 현금흐름과 보험계약 외의 경계에 있는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발생 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당국은 IFRS17의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험수익 인식방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만약 세법이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의 변경 및 수익비용 인식 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이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법인세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IFRS17이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현재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준비금전입액을 어떻게 산출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IFRS17의 평가방법을 수용할 것인지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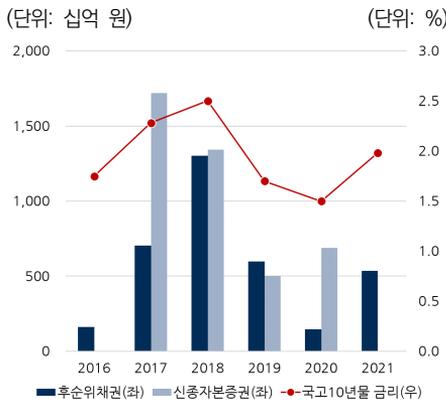
IFRS17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 조정,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별도 세무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 IFRS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한 후 IFRS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윤재원 외 2020).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각각 장단점¹⁰³⁾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환경이나 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조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03) 첫 번째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고 IFRS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 조정하는 방안은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확대 되지 않고 현재 수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회계 및 감독기준에 의존하던 보험 손익귀속 및 부채평가의 세무기준을 규정하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두 번째 현행 법인세법 유지하고 별도의 세무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은 세무조정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별도 재무제표 작성비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세 번째로 IFRS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생명보험의 장기계약 특성을 반영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법인세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세수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넷째로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한 후 IFRS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식은 일정 기간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정된 다음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경과기간 동안 이중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납세협력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윤재원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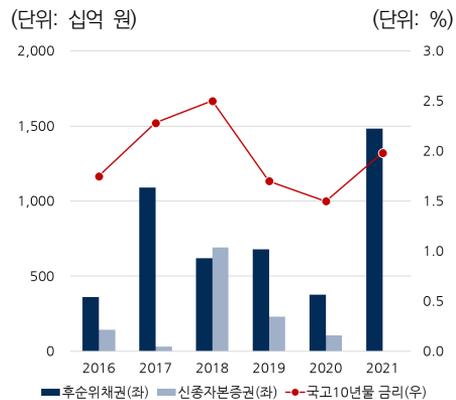
3. 자본관리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경제 환경과 규제체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무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저성장과 저금리 및 시장경쟁 심화로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약화로 인해 내부 자본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보험회사 자본이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¹⁰⁴⁾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만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 자본적정성의 제고를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의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그림 VI-2〉와 〈그림 VI-3〉 참조).

〈그림 VI-3〉 생보사 자본성증권 발행현황



〈그림 VI-4〉 손보사 자본성증권 발행현황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유지¹⁰⁵⁾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발생에 따른 자본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려우므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104) 보험회사가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채권평가이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매도가능채권의 평가이익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매도가능채권의 평가손실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 채권평가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던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평가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105)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약 273.2%, 손해보험은 214.5%으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수준인 1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입 예정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어 채권의 재분류를 통해 자본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⁰⁶⁾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차입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1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및 제7-11조 등은 차입방식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당좌차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¹⁰⁷⁾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함), 채권발행, 기업어음 발행,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만을 발행할 뿐 나머지 차입방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차입 방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주요 자본조달 수단인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인정의 측면에서, 후순위채는 조달 금리의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발행 금액 전액이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후순위채는 100% 자본으로 인정을 받다가 만기가 5년 이하가 되면 매년 발행금액의 20%씩 자본에서 차감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재연장이 가능하나 매년 확정된 금리를 지급해야 하므로 후순위채보다 높은 금리부담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는 경제적 상황 및 금융시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 뒤 자본성증권의 발행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106) 노건엽·이연지(2021)

107)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현금을 수취하고 일정기간 이후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담보부 차입방식임

〈표 VI-1〉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비교

구분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회계처리	자본	부채
분류	기본자본	보완자본
만기	30년 이상	5년 이상
자본인정비율	100%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에 매년 인정금액 20%씩 차감
인정한다	자기자본의 25% (초과금액은 보완자본)	자기자본의 50%

자료: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회사들은 자본관리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주로 사용하다가 2016년에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이 허용되고 관련 규정도 완화된 이후 보험회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2019년 금융당국은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보험회사에 재무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후순위채의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규모를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¹⁰⁸⁾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¹⁰⁹⁾을 개정하였다. RBC에서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의 25%까지 인정되나 K-ICS 4.0은 Step-up(5년 후 이자율 가산 등) 조항이 없는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은 총 요구자본의 10%로 제한되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총 요구자본의 15%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인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비조건부 자본성 증권과 더불어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가용자본의 증가로 인한 자본의 충실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조건부자본증권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방식과 발행주체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리스크 수준과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산·부채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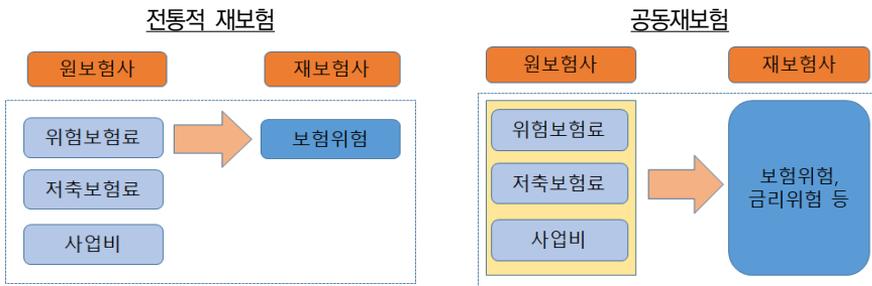
108)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109)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2019. 6. 25에 개정하였음

한편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관리뿐만 아니라 부채구조조정을 통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부채 구조조정¹¹⁰⁾으로는 보유 계약을 재보험사에 전가(공동재보험),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계약이전)하거나 이미 판매한 계약을 계약자로부터 매입(계약재매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coinsurance)은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을 포함하여 위험을 전가하는 재보험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나 자산은 원보험사가 운용하고 부채만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동재보험은 감독규정 개정¹¹¹⁾ 등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1개사만 계약을 체결¹¹²⁾하고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림 VI-5〉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계약재매입(buy-back)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한 계약을 다시 매입하여 보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한다. 해외 보험회사 중 벨기에 생명보험회사는 고금리 계약에 대해 10~30%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하였으며 프리미엄 제시 후 일정기간(1~3개월)동안 보험계약자의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계약이전(transfer)은 이전 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 대상계약 계약자 총수의 1/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이의를 제기하

110) 노건엽(2020)

11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3호(2020. 4. 1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12) 연합뉴스(2021. 3. 31), “ABL생명-RGA재보험, 국내 ‘첫 고금리 보험계약 공동재보험’ 계약”

면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다만 알리안츠는 적용이율 4% 이상인 보유계약을 대만 중국생명에 이전하였다.



이러한 계약재매입과 계약이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¹¹³⁾임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밝혔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채구조조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약환급금과 시가방식 보험부채 차이인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에 대한 가용자본 반영방법, 음(-)의 준비금 인정 방안 등 계약자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가용자본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요구자본 중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한도, 장기국채선물 도입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업법에서 파생상품 거래한도는 총 자산의 6%로 제한되며 이중 장외파생상품은 3%로 제한되어 있어 금리리스크 관리,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등 파생상품 활용 시 한도로 인해 충분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과거 원가방식의 제도에서는 거래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였으나 K-ICS는 시가방식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므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내에서 간접적인 한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는 주로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자산 및 부채의 듀레이션을 관리하지만 금리선도, 국채 선물 등을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채 선물의 경우 현재는 3,5,10년물밖에 없지만 30년물과 같이 장기상품이 거래된다면 보험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금리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채구조조정,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리 등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연구 분야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1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 30),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결과)”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5), 「IFRS4 2단계 도입과 대응」, 금융감독정보 제15-50호
- _____ (2020), 『보험 검사업무 안내서』
- 김관치(1993), 『계약자배당제도에 대한 제언-신설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 김규승·양성문·장강봉(1997),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 김태훈(2014), 『우체국보험 신계약비 상각기간에 따른 손익의 연구』, 우정경영연구소
- 김해식(200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보험연구원
- _____ (2004),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보험연구원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2012),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보험연구원
- 나동민(2007), 『생보산업의 손익배분기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남효성(1999),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및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생명보험상품수리, 보험개발원
- 노건엽(2020),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CEO Brief, 보험연구원
- 노건엽·이연지(2021),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노병윤·장강봉(1999),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 삼일회계법인(2007), 「현금흐름방식보험가격 산출체계 도입이 국내 보험사 경영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
- 오창수(2015), 「IFRS4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제도 운영방안」, 『보험금융연구』
- 오창수·김경희(2020), 「IFRS17 도입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 『계리학연구』
- 윤재원·박성중·남혜정(2020), 「IFRS17 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 개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 이장희·김동겸(2007),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 이준호(2016),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기준 변화로 인한 보험업계 영향 및 고려사항」, 『손해보험』, 제573호, 손해보험협회
- 이태기(2018), 「IFRS17 시행 대비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 운영방향」, 금융감독원·한

국회계학회 IFRS17 재무제표 표시체계 컨퍼런스 발표자료
정봉은·노병윤·목진영(1997),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한국보험계리사회(2003), 『생명보험 III』
회계기준위원회(2019),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회계연구원

AASB(2019), “AASB 1038 Life Insurance Contracts”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2021a), “PROFESSIONAL STANDARD 201”
_____ (2021b), “PROFESSIONAL STANDARD 202”
APRA(2012a), “Prudential Standard LPS 340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_____ (2012b), “Reporting Standard LRS 430.0 Sources of Profit”
ASB(2006), “Dividends for Individual Participating Life Insurance, Annuities, and Disability Insurance, Actuarial Standard of Practice No.15”
AXA(2015), “契約者配当について”
CFO Forum(2005), “Embedded Value: An Educational Session Prepared by the CFO Forum for the Insurance Working Group”
CIA(2014), “Dividend Determination for Participating Policies, Educational Note”
Coleen Clark(2018),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in Canada Second Edition*, Captus Press
IAFA(2005), “Current Developments in Embedded Value Reporting”
IMF(2020), “Accounting Standards and Insurer Solvency Assessment”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2005), “IAA Survey – Participating Benefits”
Life Insurance Actuarial Standards Board(2002), “Actuarial Standard 4.02”
NAIC(2014), “Standard Non-Forfeiture Law for life insurance”
_____ (2021), “Valuation Manual”
OSFI(2010), “Guideline: Source of Earnings Disclosure”
_____ (2018), “Life Insurance Capital Adequacy Test”

PwC(2020), *Solvency II: A guide to the new regime*, sixth edition

明治安田生命(2020), “経営活動と決算の概況”

上田泰史(2009), “日本における生命保険契約の解約返戻金について~アクチュアリー視点から~”,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第二部会 保険の基本問題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
52回の資料3

日本アクチュアリー会(2012), “保険1(生命保険)”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호주 정부 API 홈페이지(<https://api.gov.au/definitions/definition/fs/de5042>)

○ Zillmer식 책임준비금 계산은 계약 초기에 발생하는 계약체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 초기의 부가보험료를 평균보다 크게 책정하고, 이후의 부가보험료를 평균보다 작게 책정하는 방식임(〈부록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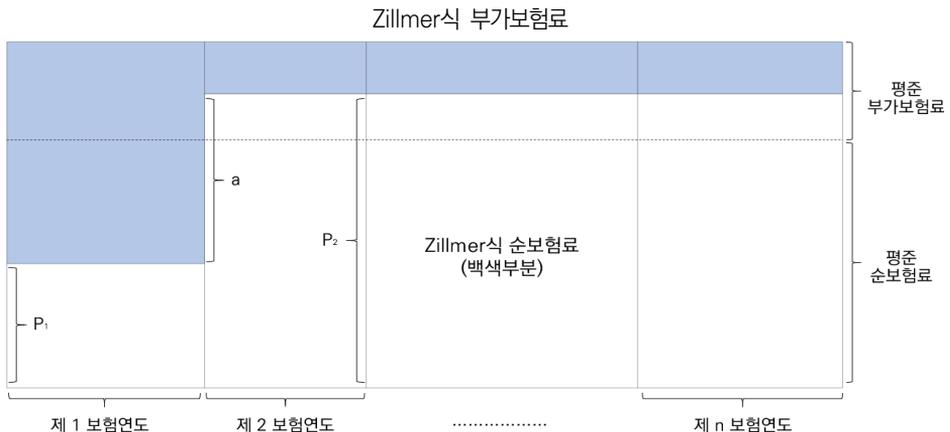
- 영업보험료는 평균이나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평균이 아님

$$\text{평균순보험료의 현가} = \text{제1보험연도의 순보험료의 현가} + \text{제1보험연도 이후의 순보험료의 현가}$$

$$\text{평균부가보험료의 현가} = \text{제1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의 현가} + \text{제1보험연도 이후의 부가보험료의 현가}$$

- 즉,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계산식에서 부가보험료(영업보험료 - 순보험료)도 매년 일정액(평균)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달리 Zillmer식 책임준비금 계산식은 보험연도에 따라 부가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
- 책임준비금의 경우 Zillmer식 순보험료는 초년도 순보험료가 적어 책임준비금이 적은 반면, 제2보험연도부터는 순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증가가 빠름

〈부록 그림 1〉 전기 Zillmer식 책임준비금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노건엽 KAIST 이학(통계학) 박사 / 연구위원(총괄)
E-mail : gynoh@kiri.or.kr

한상용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yhan@kiri.or.kr

박희우 KAIST 경영공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hwpark@kiri.or.kr

이연지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jlee@kiri.or.kr

연구보고서 2022-01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71-6 (정가 10,000원)
979-11-85691-50-3(세트)